

■ 판례 동향

「관세법」상 장기부과
제척기간(10년)과
관세포탈죄 및
가격조작죄의
상관관계

■ 품목분류 동향

미래 모빌리티의
품목분류(2)

■ 개정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美·中 ‘관세’ 줄다리기,
무역전쟁 재점화되나 ... 韓 영향은?





정기구독 신청

정기구독 회원이 되시면 매주 배송료 부담 없이 간행물을 받아볼 수 있고, CUSTRA 홈페이지(www.custra.com)를 통해서 주요 기사 및 법령 개정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기간 중에는 구독료가 인상되더라도 추가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 정기구독료 1년 360,000원(월 30,000원)
년 48회 발행
- 정기구독 신청 방법
 - CUSTRA 홈페이지 : www.custra.com
 -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 이메일 : know@kctdi.or.kr
 - 전화 : 02-3416-5112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96-01-0015-751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CUSTRA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발행인 이찬기

편집인 이소영

총괄 권송미 vksm73@kctdi.or.kr

편집기획 이상혁 knight1229@kctdi.or.kr

취재 하구현 sendme95@kctdi.or.kr

하세은 hse1215@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디자인 이승훈 lsh0910@kctdi.or.kr

마케팅 함동규 hdk0929@kctdi.or.kr

인쇄 경성문화사

배포 (주)아림디엠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4년 5월 6일(통권 제2081호)

I S S N 2799-7251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5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가격 7,500원

홈페이지 www.custra.com

S N S www.instagram.com/kctdi.official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C O N T E N T S

이주의 초점

- 04** 美·中 ‘관세’ 줄다리기, 무역전쟁 재점화되나 ...
韓 영향은?

06 Weekly News**20 전문가 칼럼**

정재욱 서강대학교 국제통상전공 교수

관세행정실무해설**26 관세행정안내**

한·인도 CEPA 활용 시 여러 번의 송장이
발행되는 경우 어떠한 송장정보를 기재하는지에
대한 문의

34 질의응답사례

재수출면세 가능 여부

판례동향**36 관세판례해설**

「관세법」상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과
관세포탈죄 및 가격조작죄의 상관관계

품목분류동향**55 품목분류해설**

미래 모빌리티의 품목분류(2)

64 세번 바로잡기

고추&가지 스프레드

65 상식 밖의 상품학

황금을 기계 부품으로 위장 수입

최신개정법령**68 대통령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70 부령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

「이집트산 백색 시멘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美·中 ‘관세’ 줄다리기, 무역전쟁 재점화되나 … 韓 영향은?

美, “중국産 철강에 관세 3배 인상” vs 中, “보복관세 부과 명문화”

최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美 바이든 행정부는 백악관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의 불공정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철강산업보호조치’를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 관행을 지적하며, 중국産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을 통해 자국 내 철강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한 신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맞서기라도 한 듯 중국 또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관세 인상’ 조치를 담은 ‘관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은 ‘관세’를 두고 계속해서 줄다리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 수출산업에서 양대산맥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지자 이를 면밀히 주시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美, 중국産 철강·알루미늄 관세 7.5%→최대 25% 인상

미국정부는 4월 17일 중국産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를 약 3배 인상한다는 ‘철강산업보호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産 철강 제품은 대부분 무계목 강관(Seamless Tubes), 포장용 강재(Packaging Steels) 등과 같은 틈새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중국産 철강 제품의 美 시장 점유율 및 품목을 고려했을 때 미국 내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내 중국産 철강 수입량을 살펴보면, 美 전체 철강 수입량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美 전체 철강 수요량으로 보면 전체 수요량의 약 0.6%다. 작년 미국의 철강 수입량은 총 2,560만톤으로, 캐나다에서 690만톤, 멕시코 420만톤, 중국 60만톤 등을 수입했다.

‘철강산업보호조치’는 중국정부의 보조금 및 정책 지원으로 중국産 철강·알루미늄이 과잉생산돼 시장에 저가로 판매되고 있어 중국産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7.5%에서 최대 25%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멕시코와의 협업을 통해 멕시코産 중국 제품의 우회수출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對中 관세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평균 7.5%였다.

무역법 301조는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로 미국 내 교역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의 권한으로 무역 보복 조치를 허용하는 조항이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날 전미철강노조(USW) 등 5개 노조가 제기한 중국의 조선업 부문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301조 조사 개시를 지시했다.

■ 中, 맞불관세 명시한 관세법 제정안 통과 … 中판 ‘301조’ 되나

미국의 조치에 중국정부 또한 맞불을 놓고 있다. 제14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관세법 제정안을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수출입관세 징수·납부 및 세급 혜택, 관세 보복 등 중국 수출입관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관세보복을 담은 ‘제17조’다.

중국 관세법 제17조는 중국과 특혜무역협정을 체결한 시장이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 상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중국판 ‘슈퍼 301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KOTRA에 따르면, 중국은 WTO 가입 후 20년 동안 ‘수출입관세 조례’를 통해 수출입관세를 관리했는데, 이번 관세법 제정은 수출입 관세 제·조정, 징수, 납부 등을 규범화하는 법규를 기존의 ‘조례’에서 ‘법률’로 격상한 것이다.

KOTRA는 “보호무역주의, 미국·EU 등의 對中 견제가 심화되고 있는 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수출입관세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하고, 對中 추가관세에 맞대응하는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정부는 올해 4월 30일 만료였던 미국產 카메라·드론 등 124개 품목에 대한 보복관세 면제 조치를 11월 30일까지 7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 美·中 무역전쟁에 통상환경 불안정 … 韓, “정부·업계 원팀 이뤄 대응할 것”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타깃으로 한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우리 또한 안심할 수 없게 됐다. 중국과 미국은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수출 1, 2위 국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도 해당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 철강업계는 미국의 철강 ‘수입쿼터제’로 인해 다소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정부는 한국產 철강제품의 시장 지위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량 상한을 2015~2017년 한국產 철강제품 수입량 평균의 70%로 정해두고 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이에 우리나라는 쿼터제에 따라 對美 철강 수출에서 263만톤의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중국產 철강 관세율이 높아져 수출이 감소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중국의 관세법은 우리 기업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현재 중국產 스테인리스강에 최대 24.82%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중국 관세법이 시행되면, 중국 또한 제17조를 근거로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최근 미국發 수입규제 강도와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중국產 알루미늄에 대한 301조 관세 인상 등 통상환경이 불안정하다”며, “정부와 업계가 하나의 팀을 이뤄 수출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외교부 경제안보센터는 “최근 美 행정부는 조선·해운·물류분야에서 중국이 보이고 있는 불공정 관행에 대해 301조 신규 조사 개시 발표 등 美·中 갈등이 새로운 사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의 중국 물류 플랫폼 견제 동참 요구를 할 수 있어 이를 주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하세은 기자 |

군산으로 들어오는 '특송화물', 타 지역 아닌 군산서 '통관' 가능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 4월 30일 개장 ... 전자상거래 물품 호남권 통관 거점 기대

그동안 군산항으로 들어오는 특송화물의 경우 평택·인천 등으로 보세운송 후 통관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군산에서도 통관이 가능해졌다.

관세청은 4월 30일 군산물류지원센터에서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의 개장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는 군산항으로 들어오는 특송화물을 통관할 수 있도록 1년간 사업비 총 18억원을 투입해 구축한 시설이며, 올해 2월부터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4월 30일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지원을 받아 군산물류지원센터에 입주(1층, 3,153㎡)하는 방식으로 특송물류센터를 구축했다. 참고로 군산물류센터는 군산시 소유 재산으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8월 준공했다.

그동안 군산세관은 자체 통관시설이 없어 군산항으로 반입되는 특송화물 물량을 평택·인천 등으로 보세운송 후 통관해야 해서 민간의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세관의 위험관리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 군산항으로 반입되는 특송화물 물량은 2019년 77만건에서 2023년 115만 6,000건으로, 2019년 대비 150% 증가하는 등 빠르게 증가했다.

이에 군산에 특송화물 통관시설을 설치해 인천·평택 등 수도권에 집중된 물류거점을 서해안으로 분산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화물감시·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는 연간 600만건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X-ray 검색기 3세트, 특송화물 정보와 X-ray 이미지를 함께 표시하는 동시구현 시스템 3세트, 마약·폭발물 탐지기 등 최신 감시장비를 갖추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군산세관에 자체 통관시설을 갖추으로써 입항지에서 즉시 물품을 검사할 수 있게 돼 마약, 총기류·불법 식·의약품 등 위해물품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통관·운송업 관련 신규 일자리 창출과 물류비 절감으로 군산항의 항만 물류 경쟁력 또한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하세은 기자 |

● 군산세관 특송물류센터 위치 ●



부정 수입물품 유통조사 6월 실시 … ‘알리·테무’도 첫 참여

관세청, ‘국내·외 해외 직구 플랫폼 담당자 간담회’ 개최

해외 직구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6월 부정 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이 처음으로 참여한다.

관세청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을 비롯한 국내·외 해외 직구 플랫폼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해외 직구 시장에서 국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관세청이 매년 실시하는 통신판매중개자 서면 실태조사에 대한 안내와 업계 건의·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실시 예정인 부정 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항목, 조사방법, 조사일정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향후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의 해외 오픈마켓 이용 증가에 따라 부정 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의 자체 인력·시스템·검증 체계와 소비자 보호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관세청은 그동안 간소한 해외 직구 통관절차를 악용한 범죄 단속 현황과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된 부정 수입물품 사례를 공유하며, 국내 소비자 피해 심각성을 강조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 해외 직구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부정 수입물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와 중소·제조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외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통신 판매중개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부정 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 직구 악용 밀수, 해외 직구 되팔이 등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하세은 기자 |

● 국내·외 해외 직구 플랫폼 부정 수입물품 유통 주요 사례 ●

(사례 1)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애플 아이폰 구매대행을 의뢰받았음에도 실제로는 중국산 위조 아이폰을 국내 구매자 명의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발송하는 수법으로 위조 아이폰 1,368개, 시가 12억원 상당을 국내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

(사례 2) 중국 오픈마켓에서 위조 골프클럽 764세트, 정품 시가 18억원 상당을 구매해 타인 명의를 이용한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분산·밀수입한 후 국내 온라인 개인 거래사이트 및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유통

(사례 3) 해외에서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단백질 식품 9,248개, 시가 3억원 상당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타 인명의를 이용해 분산·밀수입한 후 국내 오픈마켓에서 유통

캐나다, 수입업자 대상 온라인 관세시스템 의무 사용 시행

5월 13일부터 공식 도입 ... 통관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향상 기대

캐나다 국경 서비스청(CBSA)은 5월 13일부터 캐나다 수입업자에게 새로운 온라인 관세 시스템인 CARM(Canada Border Services Agency's Assessment and Revenue Management) 사용을 의무화한다.

CARM은 캐나다 국경서비스청이 관세평가 및 관리를 현대화하고 간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이다.

KOTRA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수입업자와 관세 중개인이 온라인상에서 세금 및 관세 계산·전자결제·상품 분류·전자문서 제출 등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

기존 캐나다 국세청을 통해 별도로 신청하고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던 수입업자, 수출업자 계정 등록도 5월 13일부터는 CARM을 통한 온라인 신청 접수가 가능해진다.

이번 2단계 전환에 도입되는 주요한 기능은 '선금 지급 전 물품 출고(RPP)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입업자는 CBSA에 관세와 세금을 지불하기 전에 물품을 출고 받을 수 있으며, 관세 및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RPP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모든 수입업자는 RPP에 등록하고 재정 보증(Financial Security)을 제공해야 한다.

또 CARM 도입 이전에는 수입 대행업체나 통관 브로커 등 중개인의 대리 재정 보증이 가능했지만, 5월 13일부터는 수입업자가 계정에 재정 보증이 등록되어야 한다.

RPP에 등록하지 않은 수입업자는 통관을 위해 관세와 세금을 전액 납부하고 관세 회계 신고서(Customs Accounting Declaration)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CBSA는 RPP 서비스 이용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 방지를 위해 RPP 등록을 원하는 경우 정식 서비스 개시일 전에 RPP 등록을 완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CARM 등록 대상은 수입업자, 관세 중개업자, 무역 컨설턴트, 재정 보증 업체 등 무역 과정에 관여하는 업체다.

다만 개인 사용 용도와 같은 비상업적 목적의 수입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캐나다로 상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경우, 현지 진출한 법인이나 아마존 셀러와 같이 현지 창고에 상품을 배송하는 경우에도 CARM 시스템 등록 대상일 수 있어 등록 필요성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

KOTRA는 “이번 CARM 시스템 시행은 캐나다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상업 목적의 물품 발송 시 수취인이 CARM에 등록돼 있어야만 수취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며, “캐나다에 비거주자 수입업자로 등록된 경우나 현지 법인이 있는 우리 기업의 경우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지연이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CARM 시스템 등록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 하세은 기자 |

인도네시아, 5월 23일부터 신규 전자통신기기 규정 적용 예정

규정상 전자통신 기기 해당하는 모든 제품, 새로 도입된 기술표준 충족 필수

인도네시아정부가 전자통신 장비 및 기기에 대한 기술표준 인증 등을 골자로 한 ‘2024년 정보통신부장관 규정 제3호’를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4년 규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거나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조립 또는 수입되는 모든 전자통신 기기는 ‘기술표준(Technical Standards)’을 충족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정부가 기술표준을 도입한 주요 목적은 ▲통신 장비 및 기기 사용으로 인한 시장과 소비자 보호, ▲통신 장비와 기기의 원활한 작동 보장, ▲통신 네트워크의 연결성 강화 등이다. 기존 2018년 규정은 특정 유형의 전자통신 기기만 기술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규정했으며, 이와 관련해 67개 통신 기기에 대한 HS Code와 설명을 부록에 제공한 바 있다. 반면, 2024년 규정은 모든 전자통신 기기 품목은 기술표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OTRA에 따르면, 국제적 또는 지역적 기준을 채택하거나 정하는 경우 기술표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인도네시아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반영한 결과 역시 기술표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부장관은 새로운 기술 도입, 제한된 서비스 범위, 수량의 통신 장비 및 기기 활용과 관련해 별도의 기술표준이 없는 국제 기준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승인기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는 추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기술표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검사는 인도네시아 내외의 검사기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검사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앞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KOTRA는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새로운 전자통신기기 기술표준 인증규정에 정의된 전자통신기기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제품은 새로 도입된 기술표준을 충족해야 해서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기 이전에 해당 기술표준의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추가로 기술표준과 관련해 정부 부처의 승인이 요구될 수 있는 상황이 예상돼 세부기준이 공개될 경우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인증서 발급 및 라벨링에 관한 규정은 2018년 규정에서도 있었으나, 2024년 규정에서는 라벨링 요구사항이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데, 이러한 변화를 우리 기업은 인식하고, 제품 라벨링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KOTRA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2018년 규정을 바탕으로 발급받은 인증서는 새로운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유효하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 기존 인증받은 제품이 유효기간 내 시장에서 계속해서 판매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기업이 새로운 규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 하세은 기자 |

국산 참외·멜론 베트남으로 수출 가능 “검역협상 최종 타결”

우리나라 참외와 멜론을 베트남에 수출하는 한편 베트남산 포멜로 수입이 가능하게 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베트남과의 식물검역 양자회의를 통해 참외·멜론 수출 및 포멜로 수입을 위한 검역협상이 최종 타결돼 양국 간 교역이 가능하다고 4월 29일 밝혔다.

포멜로는 15~25cm 정도 크기에 맞은 자몽과 유사한 감귤류 과일이다.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참외·멜론은 온실에서 재배된 것으로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수출이 가능하고, 재배지와 선과장 등록, 호박과실파리 무발생 증명 등 수출검역요건을 갖춰야 한다. 베트남산 포멜로도 재배지와 선과장 등록, 예찰, 과실파리 사멸을 위한 증열처리 등 수입검역요건을 충족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베트남과의 합의사항을 반영해 고시 제정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어 우리나라는 온주밀감과 키위를, 베트남은 여지와 패션푸르트를 후속 협상 품목으로 선정해 빠르게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참외 작황이 회복돼 5월부터 작년 수준의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초 참외는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크게 올랐다. 농식품부는 과채류 가격 안정을 위해 제철 과채류 생육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美 의료기기 품질관리 규제 정보 안내

‘미국 FDA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규정’ 개정 사항이 설명된 정보집이 나왔다.

4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미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집을 발간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번 미국 FDA 규정은 의료기기 품질관리 국제규격(ISO 13485, 2016)과 조화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28년 만에 개정됐으며, 올해 2월 최종 개정본이 발표됐다. ISO 13485는 의료기기 분야 품질경영시스템 국제 규격으로 제품 및 서비스 전 생산 과정에 걸친 품질보증체계 관련 요구사항이 포함됐다.

주요 개정 사항에는 의료기기 품질경영시스템 적용 범위 명확화, 용어 정의 설명, 미국 법령에 따른 별도 요구사항(불만 및 서비스 활동 기록 요구사항 명확화, 표시기재 및 포장의 정확성 검사 의무) 추가 등이 있다. 이번 개정된 규정은 2026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집이 국내 의료기기 업체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도 규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해외 규제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정보집은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법령정보→홍보물자료→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성은 기자 |

알리·테무 판매 어린이 제품, 카드뮴 등 발암물질 검출

어린이 제품 성분분석 결과, 국내 안전기준치 최대 3,000배 이상 초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린이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치를 훌쩍 넘어선 양의 환경호르몬 및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하고 있는 어린이 제품 252종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38종(약 15%)의 제품에서 유해성분이 국내 안전기준치를 최대 3,026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성분분석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해 해외 직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용품, 장난감 등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판매 플랫폼에서 어린이 제품으로 홍보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안전기준치를 살펴보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상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총합 0.1% 이하), 카드뮴(75mg/kg 이하), 납(100mg/kg 이하) 등이다.

관세청은 2020년부터 수입물품의 안전성 성분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유해 성분이 검출된 38종 제품 가운데 27점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82배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으며, 6점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3,026배의 카드뮴이, 5점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270배의 납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신체에 장기간 접촉 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 어린이 제품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카드뮴은 독성이 강해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며, 납은 중독될 경우 신장계, 중추신경계, 소화계, 생식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품목 유형별로 살펴보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신발·학용품·장난감 순으로 많이 검출됐으며, 납·카드뮴 등 중금속은 반지, 팔찌와 같은 액세서리와 가방, 머리띠에서 주로 검출됐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정식 수입물품과 해외 직구 물품의 안전성 검사 결과에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관세청이 2023년 한 해 동안 수입자가 안전성 기준 등 수입요건을 갖춰 정식 수입하는 어린이 제품 75점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 1개 제품(1.3%)에서만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이번 분석에서는 수입요건의 구비 없이 수입 가능한 해외 직구 어린이 제품 252점을 확인한 결과 15%에 이르는 38점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성분이 검출된 것이다.

한편 유해성분이 검출된 39개 제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하세은 기자 |

“맞춤형 축산 수출 지원” 농식품부, 스마트축산 수출지원단 출범

KOTRA, 한국국제협력단(KOICA),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수출전략과 정책사업 논의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 스마트축산 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해외 시장 개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축산 수출지원단’ 출범식을 진행했다고 4월 30일 전했다. 스마트축산 수출지원단은 스마트축산 기자재와 운영 솔루션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을 논의하고 ▲유망 수출업체 발굴, ▲국가별 맞춤형 수출 정보 제공, ▲주요 국제 박람회 참여, ▲국내 제품의 해외실증 지원 등을 총괄한다.

그동안 경쟁력 있는 스마트축산 기자재·솔루션 업체는 개별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해서 시행착오가 많았다. 업계에서는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축산 기자재와 솔루션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수출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런 요구를 반영해 농식품부는 KOTRA,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 11명을 지원단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스마트축산 수출과 관련해 ▲애로사항 해소 방안, ▲해외시장 개척 전략, ▲투자 유치 확대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출범식 당일 2024년 스마트축산 수출실증지원 사업을 5월 중으로 조기에 공모한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2023년 수출실증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해 베트남, 라오스 등 5개국에 4개 업체 제품과 솔루션 성능 검증 등을 지원했다. 동남아시아는 인구가 많고 경제성장률이 높아 향후 1인당 축산물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지 축산 농가는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스마트축산을 도입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스마트축산 수출지원단은 수출지원 사업 전반을 논의·집행할 예정으로 수출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업무 방향 및 계획, 실증지원, 박람회 참석 등 주요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수출실증 지원 사업자 결정 등 주요 현안이 있으면 긴급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우선 국내 산업 동향을 면밀히 살펴 수출 유망업체를 발굴할 계획이다. 축산 스마트팜 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기술과 경쟁력 수준을 점검하고 장비 성능과 효과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한다. 해외 진출을 대비해 장비 및 솔루션 관련 실증자료를 수시로 검증하고 수출 가능성이 있는 대상국 현장 수요를 살펴본다. 유망 수출 대상국을 발굴하는 한편, 해당 국가의 축산업 현황과 가축방역, 사료값 인상, 수급불안 등 직면한 현장 문제를 검토한다. 미국, EU 등 축산 스마트팜 주요 선진국 기술 수준과 보급 현황, 글로벌 시장 동향, 수출 전망 등의 조사를 병행한다.

동남아, 중동, 남미 등 권역별 수출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편 축산 스마트팜 장비 수출과 관련해 우리 축산물 연계 수출 방안을 제시하는 등 사후 관리를 지속할 예정이다.

| 김성은 기자 |

대한상의, 탄소감축 위한 '재생에너지 활용 컨설팅' 무료 지원

현장진단·이행전략 2단계 컨설팅 진행 ... 5월 10일까지 접수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활용 전략 무료 컨설팅에 나선다.

대한상의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글로벌 공급망 탄소감축 요구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활용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관세 제도다.

재생에너지 활용 컨설팅은 기업별 상황에 맞춰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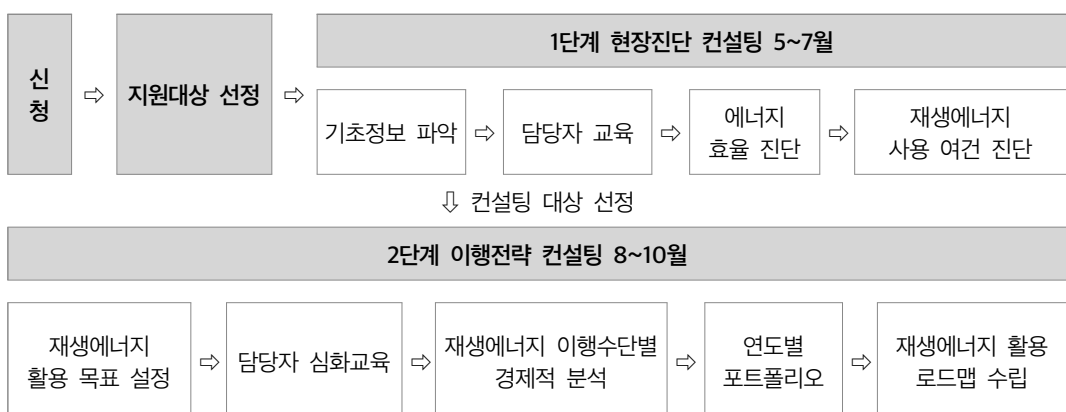
1단계 현장진단 컨설팅은 전력사용패턴과 전력설비 등 기초정보를 조사해 맞춤형 에너지 효율화와 전력사용 절감방안을 제시한다.

조사한 기초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재생에너지 설치잠재량, 사용 시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분석해 재생에너지 사용 여건을 진단한다.

2단계 이행전략 컨설팅에서는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구매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비용을 투입하고 회수할 수 있는지 등 재생에너지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맞춤형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구매방식, 경제성 분석 결과 등 재생에너지 활용 로드맵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행전략 컨설팅은 현장진단 컨설팅 참여기업 중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이 시급하거나 지원 필요성이 큰 기업을 선별해 진행한다.



재생에너지 활용 컨설팅 지원 비용은 무료이며, 컨설팅 신청은 5월 10일까지 대한상의 홈페이지와 그린에너지 지원센터(recenter.energy.or.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상의 그린에너지 지원센터 콜센터(02-6050-7111, greenenergy@korcham.net)로 문의하면 된다.

| 하구현 기자 |

2024년 4월 농식품 수출액 31억 2,000만 달러로 상승세

건강식 및 한류 관심에 힘입어 수출 성장

올해 1~4월 농식품(K-Food) 수출 누적액(잠정)이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한 31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5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3월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였던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진 것이다.

시장별로 보면 미국, ASEAN, 유럽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가장 큰 수출 시장인 미국은 경제 안정화에 따라 소비 시장이 활성화해 라면, 쌀가공식품, 음료, 과자, 김치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ASEAN 지역은 한류가 확산하며 K-푸드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편의점 등 새로운 유통채널을 통한 판매가 확대되면서 5.0% 성장했다. 33.1% 상승하며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유럽 시장은 한류 및 소비 회복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은 소비 침체 지속으로 전년 대비 수출액이 감소한 상황이나, 올해 4월(△7.2%) 대비 감소폭이 다소 완화(△1.8%)됐다. 일본의 경우 엔저가 가속화되고 소비 심리가 풀리지 않아 전년 대비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라면과 쌀가공식품(김밥 포함), 음료, 김치 등 주력 수출 품목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특히 라면은 한류 콘텐츠와 연계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유럽에서 안전성 이슈가 해소되며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즉석밥 및 냉동김밥 등 쌀가공식품 역시 건강식과 한류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 중이다. 김치의 경우 식물성·발효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을 지속해서 확대하기 위해 기업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출 상위 기업 100곳에 일대일 면담을 지원하는 등 밀착 관리로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 수출 지원기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수출정보데스크 기능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 김성은 기자 |

● 주요 시장별 농식품 수출액 ●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3.1.1.~2023.4.30.	2024.1.1.~2024.4.30.	증감률
미국	413.1	478.7	15.9
ASEAN	601.3	631.3	5.0
유럽(EU·영국)	173.4	230.8	33.1
중국	447.9	439.9	△1.8
일본	479.8	452.3	△5.7
GCC	100.3	86.7	△13.5

인천항, 1분기 컨테이너 물동량 역대 최고 기록

올해 1분기 컨테이너 물동량 87만TEU 기록 … 수출 증가율 11%로 회복세 뚜렷

인천항을 통한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며 컨테이너 물동량 기준 역대 1분기 최고를 기록했다. 이전 역대 1분기 최대 컨테이너 물동량은 2021년 1분기 83만 1,577TEU였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올해 1분기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한 87만 48TEU를 기록하며 역대 1분기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전 역대 1분기 최대 컨테이너 물동량은 2021년 1분기 83만 1,577TEU였다.

IPA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물동량은 수출 42만 8,564TEU, 수입 42만 6,176TEU로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1.0%, 6.0%씩 증가했으며, 환적 물동량은 3,878TEU를 기록했다.

국가별 컨테이너 수출 물동량은 중국 27만 658TEU, 말레이시아 1만 81TEU, 베트남 3만 5,782TEU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3만 232TEU(12.6%), 3,336TEU(45.9%), 1,844TEU(5.4%) 증가했다. 수입 물동량은 미국 1만 3,185TEU, 대만 1만 3,629TEU, 중국 22만 5,756TEU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각각 4,972TEU(60.5%), 4,506TEU(49.4%), 4,402TEU(2.0%) 증가했다.

對中 수출 품목에서는 기계류, 잡화, 섬유류가, 수입 품목에서는 전기기기, 플라스틱, 섬유류가 주종을 이뤘다. 對베트남 수출에서는 플라스틱, 對말레이시아 수입에서는 화공품, 목재류가 주로 증가했다. IPA는 역대 1분기 최고 컨테이너 물동량 달성에 대해 對中 수출입,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수출 물동량 호조 및 신차와 중고차의 수출 컨테이너화 증가 등을 물동량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특히 1분기 동안 차량 수출은 17만 8,460대를 기록했으며, 신차의 경우 작년 1분기 6만 2,678대에서 올해 6만 8,842대로 증가했고, 컨테이너로 수출되는 월 대수는 올해 4,000대 수준 이상을 보였다. 중고차 수출은 올해 1분기 10만 9,618대가 수출돼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으며, 이 중에서 컨테이너 운송 수출은 8만 6,217대를 기록했다.

| 하구현 기자 |

● 인천항 분기별 컨테이너 물동량 현황 ●

(단위 : TEU,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물동량	증감량	증감율
1분기	699,754	831,577	757,447	800,538	870,048	69,510	8.7
2분기	847,158	864,291	797,604	849,242	-	-	-
3분기	859,598	819,981	815,575	879,245	-	-	-
4분기	865,904	839,094	821,970	932,338	-	-	-
합계	3,272,413	3,354,942	3,192,596	3,461,362	-	-	-

글로벌최저한세 시행에 따른 국제조세 분쟁가능성 대비해야

대한상의, 조문해석 차이 분쟁·국가별 인센티브·조세조약 원칙과 상충문제 면밀 검토 필요

글로벌최저한세 제도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이 향후 국제조세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글로벌최저한세 설명회’를 4월 2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부터 제도가 시행돼 1분기에 해당하는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시점을 감안해 대상기업 실무자들의 제도 이해와 신고서 작성방법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연결 매출액 7억 5,000만 유로(약 1조 1,000억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특정 국가에서 납부한 법인세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은 경우 최종 모기업(본사)의 소재지 국가에서 추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국제조세제도다.

2021년 10월 OECD에서 최종 확정된 후 우리나라에는 2022년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도입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우리 수출기업 중 대상기업은 최종 모기업 기준 250~300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설명회에 참여한 법무법인 율촌의 최용환 변호사와 정현 회계사는 올해 1월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과 기업들의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대표적 법률 쟁점과 고려사항은 ▲다국적기업 및 과세당국 간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가능성, ▲각국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영향 및 글로벌 조세경쟁, ▲글로벌최저한세 규정과 기존 조세조약 원칙(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불가)과의 상충문제 등이다.

최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을 받는 우리 수출기업이 많게는 300여개에 달할 수 있다”며, “우리 수출기업과 각국의 과세당국 간 조문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글로벌 조세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국적기업그룹의 다양한 지배구조 개념과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방법에 대해 “세액산정 시 실무적으로 다양한 법률 쟁점이 있는 만큼 글로벌최저한세와 관련해 올해 OECD에서 추가 발표 예정인 주석서 및 행정지침 등을 유의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진회계법인 김선중 회계사는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 계산방법을 설명하면서 “글로벌최저한세는 신규 제도임을 감안해 시행 초기인 올해부터 2026년까지는 ‘전환기 적용면제 특례(safe harbor)’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각 기업에서는 전환기 적용면제 대상·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하구현 기자 |

수은, 올해 2분기 수출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 전망

반도체 업황 개선, 국제 유가 상승 등이 수출 증가세 견인

올해 2분기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8~9% 증가한 1,700억 달러 내외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해외경제연구소는 5월 2일 '2024년 1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2분기 전망'을 통해 지역별 경기 차별화로 수출선행지수는 소폭 하락했지만 가격효과 및 작년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 경기 회복세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선행지수는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 수출용 수입액, 산업별 수주현황, 환율 등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종합해 수출증감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든 지수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출실적은 전년 동기(1,512억 달러) 대비 8.3% 증가하고, 전기(1,681억 달러) 대비로는 2.6% 감소한 1,637억 달러였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선박, 디스플레이 등 15대 주력품목 가운데 10개 품목이 증가했으며, 지역별로는 미국, 중국, ASEAN 등이 증가했다.

2분기 수출선행지수는 120.9로 전년 동기(122.3) 대비 1.4p, 전분기(122.6) 대비 1.7p 하락했다.

이는 미국 경기는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유럽 등은 개선세가 강하지 않고 중동 리스크 등 지정학적 불안까지 고조되며 지역별 경기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수출용 수입액 지수는 수출물량은 개선됐으나 1분기 유가가 안정적이었던 영향으로 전기 대비 7.5%, 전년 동기 대비 14.8% 하락했다.

가격 경쟁력에서는 올해 1분기 평균 환율은 전분기 대비 0.5% 상승한 달러당 1,328원을 기록했으나 4월에는 중동발 분쟁으로 장중 1,400원까지 상승, 가격 경쟁력은 높은 상황이나 원자재 수입가격 상승 압력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물가는 반도체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유가도 점진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2분기 수출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상승세로 전환될 전망이며 여기에는 반도체와 조선 수출 호조세가 수출 회복세를 이끌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보고서는 지역별 경기차별화로 수출선행지수는 소폭 하락했으나, 우리 수출 비중이 큰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국제 유가 상승으로 수출단가 상승이 이어져 올해 2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기업 애로사항으로는 최근 원유를 비롯해 리튬, 구리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원재료 가격 상승(29.4%→38.4%)'이 전기 대비 9.0%p 상승하며 최대 비중을 차지했고,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원화환율 불안정(42.0%→30.0%)' 응답도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 공세(30.9%→30.0%)'도 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 하구현 기자 |

中 바이어, “한국 제품 품질·가격 경쟁력 키워야”

무역협회, 중국 주요 도시 한국 소비제품 판매 바이어 276명 대상 설문조사 진행

중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보다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품질과 가격 경쟁력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4월 28일 발간한 ‘중국 바이어가 본 한국 소비제품 경쟁력 및 시사점’ 보고서 결과다.

베이징시, 쓰촨성, 상하이시, 산둥성, 충칭시 등에서 한국 소비재를 수입·판매하는 중국 바이어 2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중국 시장 내 한국제품 경쟁 대상국은 일본(49.3%), 중국(33.3%), 미국(7.6%), 동남아(5.4%), 기타(4.4%)로 꼽혔다.

조사에 응답한 바이어들은 한국 제품은 일본산 대비 품질(26.5%), 중국산 대비 가격(51.1%)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 외 국가와의 비교에서는 동남아(47.1%)·대만(23.9%)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고, 미국(35.9%) 및 EU(19.2%) 제품에 대해서는 브랜드 경쟁력이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응답자의 39.1%가 전시회나 상담회에서 한국 제품에 관한 정보를 얻고 있으며 지인소개(17.8%), 거래처(16.3%), 인터넷(12.0%), 방한 기회(12.0%)가 그 뒤를 이었다. 2018년 진행된 조사와 비교하면 전시회·상담회 비중이 증가했고 상대적으로 인터넷 검색 비중이 하락했다. 또한 49.6%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한국 제품을 유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바이어들이 한국 제품을 구매하는 주된 이유는 품질(46.7%)이라고 답했고 ▲가격(17.0%), ▲디자인(12.3%), ▲브랜드(12.0%)가 뒤를 이었다. 향후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한국 제품으로는 ▲화장품(33.0%), ▲미용용품(17.4%), ▲식품(14.5%), ▲의료·보건용품(14.5%) 등이 꼽혔으며 K-뷰티와 K-푸드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확인됐다.

바이어 응답자의 55.8%는 코로나19 이후 한국 제품의 인기가 비슷(36.6%)하거나 상승(19.2%)했다고 긍정적으로 답한 반면, 44.2%는 한국 제품 인기가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주된 하락 요인으로는 ▲중국 제품의 한국 제품 대체 가능, ▲제품 경쟁력 부족, ▲불합리한 가격 등을 들었다.

한국무역협회 전보희 수석연구원은 “최근 중국 소비시장에서 Z세대가 급부상하며 품질과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 구매하는 이성소비(理性消費·합리적 가성비 추구) 트렌드가 자리 잡고 있다”며, “일본·중국 제품 이상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후 발표될 내수 부양책인 이구환신(以旧换新·소비재 보상판매) 정책의 실시 기간과 지역, 대상 제품 등 세부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김성은 기자 |

관세청,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대국민 부문 아이디어 공모

관세청은 특허청,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2024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대국민 부문 아이디어 접수를 5월 2일부터 6월 28일까지 진행한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관세·경찰·소방·해양 경찰 4개 분야의 재난·재해, 사건·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기술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작년부터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존 공무원 부문에 더해 대국민 부문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총기류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 국내 밀반입 차단에 필요한 관세행정 전반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각 분야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는 지식재산 전문가와 함께 고도화돼 공개된 후 각 청에서 활용하거나 현장에 적용한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개인 또는 팀 단위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관별 과제 확인과 아이디어 제안은 특허청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www.idearo.kr)'에서 할 수 있다.

인천세관·인천중기청, 지역 기업 수출 지원한다

인천세관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해외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인천 지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4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출 도전기업 지원사업(E-챌린지100+)' 참여 기업을 상시 모집한다.

수출을 시작하거나 시장 다변화 등 확대를 준비 중인 지역 기업에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수출 프로그램을 지원·연계한다. 참여 기업에는 무역 및 통관 분야 전문가 관세사를 일대일 매칭해 무역계약서와 원산지증명서를 비롯해 수출에 필요한 서류 검토 및 상담·자문을 기업별 수출 단계에 맞춰 지원한다. 해외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 전략 등 온오프라인 교육과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항공특송 요금 우대할인 등 후속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며, 희망하는 기업에는 FTA·원산지 관련 컨설팅 지원을 연계한다. 본사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중기청 홈페이지(mss.go.kr/incheon), 인천세관 홈페이지(customs.go.kr/inche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인사]

■ 과장급 전보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 **김 원 희**
관세청 연구개발장비팀장 **박 석 이**
속초세관장 **장 진 덕**
부산세관 통관국장 **민 정 기**

<2024년 5월 1일자>

이란·이스라엘 갈등 고조에 따른 해상물류에 대한 영향



정재욱 |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공 교수

올해 4월 1일,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폭격 이후 이란과 이스라엘이 맞대응성(tit-for-tat) 보복을 이어가면서 중동 지역의 양대 군사 강국인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4월 13일과 19일, 양측이 각각 상대방 본토를 타격하는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중동 전체가 전쟁에 휩싸일 수 있다는 위기감이 조성됐다. 다행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확전을 막기 위해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 전면전을 피하면서 상황을 관리하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양쪽 모두 상대방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최고 수준의 응징에 나서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향후 양측의 군사적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작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가자 전쟁의 여파로 홍해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아시아·유럽 간 해상물류망이 이미 큰 타격을 받았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다면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 또한 위태로워진다. 가자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나 시리아군과 이스라엘 간의 군사적 충돌도 늘어나고 있어 이에 따른 해상물류와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갈등 배경과 가자 전쟁에 대한 전망을 짚어보고 이로 인한 글로벌 해상물류에 대한 영향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이란·이스라엘 갈등의 배경과 원인

지금이야 이란과 이스라엘이 중동 지역에서 최대 앙숙 관계이지만 사실 두 나라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전쟁을 한 적이 없는 관계다. 양국이 2,000km 이상 떨어져 있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영토적 분쟁이 있는 관계도 아니다. 사실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전까지 이란과 이스라엘은 꽤 우호적인 관계였다.

팔라비 왕조의 이란은 당시 중동의 대표적인 친미 국가였고 신생 독립국인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한 몇 안 되는 중동 국가 중 하나였다. 이스라엘의 독립 전후에 벌어졌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내전과 주변 아랍국가와 이스라엘 간 네 차례의 중동 전쟁 모두 이란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이었다. 중동 전쟁 기간 이란은 이스라엘의 주요 석유 수출국이었고 이란과 이스라엘이 미사일 개발을 비롯한 군사적 협력을 이어갈 정도로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였다.

양국 관계가 변하게 된 기점은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다. 팔라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혁명을 완성한 아야톨라 호메이니는 이슬람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시온주의자의 손에서 해방시켜야 한다고 외쳤다. 이는 아랍·이스라엘 갈등이 중동 지역 이슬람 국가와 이스라엘 간의 갈등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에는 이라크를 좀 더 당면한 위협으로 인식했던 이스라엘이 이란을 물밑 지원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이스라엘 접경 지역에 위치한 군사 조직을 지원하면서 양국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게 됐다.

가자 전쟁의 배경에도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내포돼 있다. 작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중남부 지역을 기습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주장했고, 이란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대해 전면전을 벌인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 북쪽 국경에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군사적 충돌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 남부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거나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국가의 선박을 선별 공격하고 있다.

한편 이란 정부는 작년 12월, 이란의 주요 석유 시설이 마비됐던 사이버 공격이 이스라엘의 소행이라고 주장한다. 가자 전쟁 동안 이스라엘은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등에 있는 이란혁명수비대(IRGC) 시설을 폭격했다. 급기야 올해 4월 1일, 국제법상 자국 영토로 인정되는 이란의 다마스쿠스 주재 영사관을 이스라엘이 공격해 이란혁명수비대 고위급 장성을 포함한 10여명이 사망했고, 4월 13일,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사상 첫 이스라엘 본토 공격을 시행했다. 4월 19일, 이란의 주요 산업도시인 이스파한의 대공망을 이스라엘이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양측 모두 공격 사실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올해 4월 말 현재 양측의 군사적 대응은 일시적인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가자 전쟁의 전망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가자 전쟁이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 남부 도시 라파에 대한 진입 작전을 통해 완전한 가자 점령을 공언하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해 이스라엘에 우호적인 국가들도 라파 지역에 피신 중인 140만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이 희생될 수 있는 라파 지상전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타냐후 정부는 라파 지상전을 통해 가자 지구를 완전히 점령하고 승전을 선언하고자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자 지구가 안정화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놓여있다.

한편, 가자 지구 내에서 전쟁이 종식되더라도 북쪽 이스라엘·레바논 국경과 이스라엘·시리아 국경에서 헤즈볼라나 시리아군과 이스라엘군 간의 군사적 충돌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하마스 공습의 공포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자국을 위협하는 헤즈볼라 세력을 괴멸하기 위해 군사적 대응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헤즈볼라와 이를 지원하는 이란 또한 이스라엘의 대응을 좌시하기는 어렵다.

이스라엘 북쪽 국경 외에도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 남부를 지나는 선박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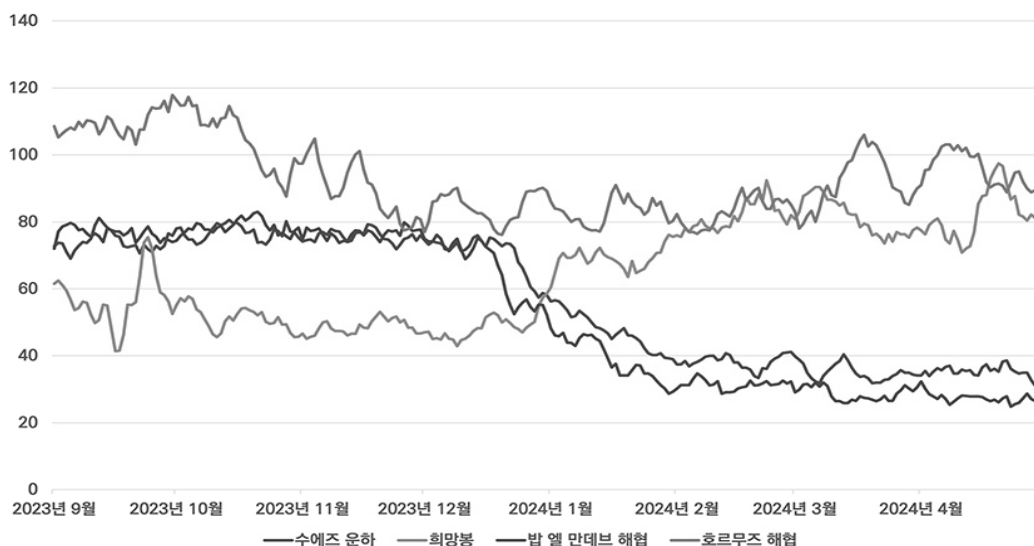
등 중동 지역 전체에서 이란의 대리 군사 조직과 이스라엘 간의 저항도 장기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 이란 영사관 폭격처럼 이스라엘이 직접 이란을 타격하는 형태의 군사적 공방이 재현될 수는 있겠지만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전면전을 일으킬 수 있는 대규모 직접 공격의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생산시설이나 핵시설을 직접 공격하는 경우 양국 간 대규모 전면전의 불씨가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이나 이란 모두 행동의 유인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다. 한 가지 문제는 양국 모두 정부가 극단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란에 대한 직접 공격을 주장하는 이스라엘의 극우 세력이나 이스라엘과 공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진 이란 내 이슬람 극단주의가 강화되는 경우 중동 역내 전쟁의 불씨가 될 것이다.

향후 해상물류에 대한 영향

작년 11월 19일,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남부를 지나는 일본 해운사 NYK의 갤럭시리더호를 나포한 이후 이스라엘 혹은 이스라엘의 우방국의 민간 상선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면서 전 세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의 30%, 상품 무역량의 12%를 담당하는 수에즈 운하가 위태롭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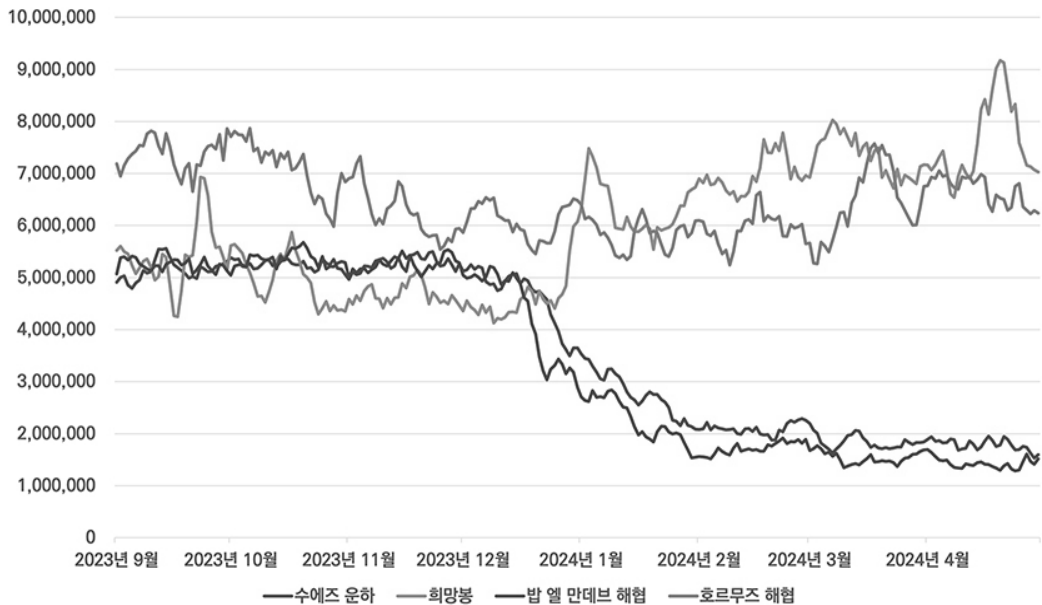
IMF의 운송 모니터링 플랫폼 포트워치(PortWatch)에 따르면, 2023년 12월을 기점으로 홍해 남부 밥 엘 만데브 해협과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일일 통행량은 약 30~40척 수준으로 50% 이상 감소했고, 일일 물동량 또한 60% 이상 감소했다. 후티 반군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해상 수송로가 위협받으면서 주요 글로벌 해운사들은 홍해를 우회해 남아프리카공화국 희망봉을 경유하는 경로로 대체했다. 이에 따라 희망봉을 경유하는 일일 통행량은 약 두 배로, 일일 물동량은 60%가량 증가했다.

● 해상운송 주요 요충지 일일 통행량(선박수, 7일 이동평균) ●



자료 : IMF PortWatch

● 해상운송 주요 요충지 일일 물동량(M/T, 7일 이동평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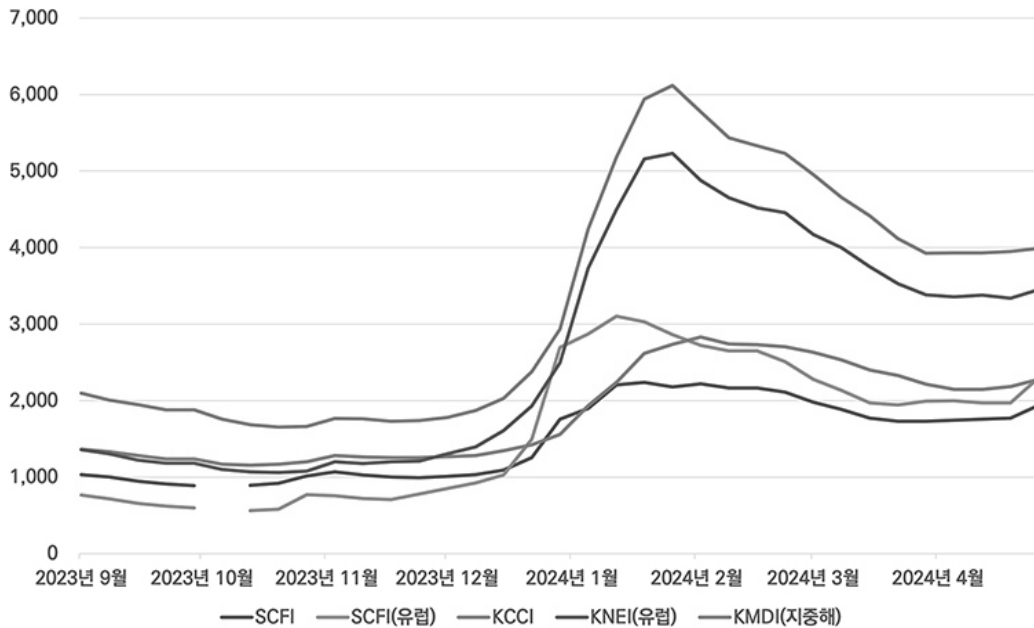


자료 : IMF PortWatch

올해 1월 10일 UN 안전보장이사회는 후티 반군의 민간 상선 공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10개국인 밥 엘 만데브 해협을 지나는 상선을 보호하는 '번영의 수호자 작전(Operation Prosperity Guardian)'을 수행했다. 이후 일부 선사가 수에즈 운하 이용을 재개했으나 다시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으면서 현재까지도 대부분 선사들이 홍망봉을 경유하는 우회 항로를 이용하고 있다. 4월 26일에는 예멘 해안에서 약 600km 떨어진 인도양 북부 아라비아해를 지나는 MSC 오리온(Orion)호가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홍해 남부로 국한됐던 공격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수에즈 운하를 경유해야 할 아시아·유럽 간 운항이 아프리카 대륙을 우회하면서 항로가 9,000km나 길어졌다. 이에 따라 운항 시간도 일주일에서 열흘 가량 증가했다. 선박 보험회사들이 홍해 항로를 경유하는 선박에 대해 전쟁위험할증(War Risk Premium)을 책정하면서 운임 단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해상화물운임 또한 증가해 작년 9월 초 20피트 컨테이너(TEU)당 1,000달러 수준이었던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4월 말 1,940.63달러/TEU로 약 2배 가량 상승했다. 동기간 상하이·유럽 항로 운임지수는 768달러/TEU에서 2,300달러/TEU로 약 3배 상승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발표하는 글로벌컨테이너선운임지수인 KCCI도 동기간 약 1,300달러/TEU에서 2,200달러/TEU로 67% 가량 상승했고, 유럽 및 지중해 쪽 항로 운임지수는 190~254% 상승했다.

● 주요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추이 ●



자료 : 상하이거래소(SSE), 한국해양진흥공사(KOBC)

앞서 가자 전쟁의 향방에 대해 전망한 것처럼 홍해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상당 기간 장기화할 것으로 보여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는 아시아·유럽 간 해상물류에 대한 비용 부담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후티 반군이 이란과 외교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선박의 안전을 보장해준 덕에 최근 중국 해상 운송회사들이 다른 미국이나 유럽 선사들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남아시아 국가들은 물류망 경색으로 인한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다면 홍해는 물론 전 세계 원유 공급의 약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위험 요인도 증가하게 된다. 이란 남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폭 39~50km의 호르무즈 해협은 대부분의 중동産 석유 및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해상물류가 통과하는 구간이다. 수에즈 운하와 달리 대체 가능한 해상물류 통로가 없어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주목받는 요충지다. 올해 4월 13일, 이란의 對이스라엘 보복 공격 당시 이스라엘 자본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조디악(Zodiac) 해운그룹 계열 회사의 MSC 애리즈(Aries)호가 이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포된 바 있다.

가자 전쟁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물동량 자체에 큰 변화는 없었으나 향후 이란·이스라엘 간 군사적 긴장이 격화될 경우 이란이 해협을 봉쇄할 수도 있다.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일시적으로라도 봉쇄된다면 현재 배럴당 80달러 선인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이상으로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기준 국내 공급 석유의 72%와 천연가스 31%가 중동産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국내 에너지 수급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란이 바레인에 있는 美 해군 5함대와 군사적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장기간 봉쇄하기 어렵다는 점, 해협 봉쇄 시 이란産 석유를 포함한 중동産 석유의 주수입국인 동아시아 국가가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반면, 이미 국내 원유 생산으로 충분히 에너지 자급이 가능한 미국에 대한 타격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란에 효용성이 그리 높지 않은 수단이다.

중국의 경기 침체로 인한 글로벌 무역 수요 침체와 에너지 수요 감소로 인해 장기간 국제 유가의 급등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요소다. 이번 이란·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끝난 후 오히려 국제유가가 하락한 원인으로 양국 간 직접 충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도 있지만 국제유가에 배럴당 5~10달러 수준의 중동 지역 위험할증이 先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유가 인상이 장기화된다면 물류비용 또한 상승할 수 있겠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가로 인한 직접적인 비용 인상보다는 군사적 긴장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와 보험 비용 증가로 인한 간접적인 비용 인상 효과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한·인도 CEPA 활용 시 여러 번의 송장이 발행되는 경우 어떠한 송장정보를 기재하는지에 대한 문의

홍 재 상 | 예슬사랑관세사무소 관세사

1. 질문 & 답변

협정명	한·인도 CEPA
	거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원산지증명서 '제3국 송장' 란에 어느 회사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	1. 인도 제조업체 A 2. 홍콩 대행자(홍콩 대리점) B 3. 홍콩 대행자(D에게 최종적으로 인보이스 발행) C 4. 수입자 D
답변	제3국의 운영인이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 '제3국 송장' 란에 (√)로 표시하고 송장을 발행한 회사 또는 운영인의 이름·주소 및 국가 등의 정보를 제14란에 표기합니다. 사례에서 원산지증명서 발행 주체인 인도 A社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송장을 발행한 홍콩 B社가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돼야 할 제3국의 회사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한·인도 CEPA의 원산지 증명

(1) 개요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23년 현재 한·인도네시아 CEPA까지 총 21건의 FTA가 발효돼 있다. 그중 한·인도 CEPA는 우리나라와 인도 간 협정으로 2010년 1월 1일 발효됐다.

상품무역 관점에서 FTA 목적상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물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에 대한 것인데,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각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상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원산지 상품 요건은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충족됐는지 자체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상품무역에 관한 FTA 목적상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즉 FTA 체결당사국 간 합의한 관세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FTA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 상대국의 원산지 상품이 국내로 수입돼야 특혜관세를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 세번변경기준(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과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on), 특정공정기준(Specific Process Criterion, 가공공정기준이라고도 함)으로 나뉘는데, 협정·품목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되며, 한·인도 CEPA의 경우 대부분의 물품에 대해 CTSH(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RVC 35%(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을 통해 원산지 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 결정기준 등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규정을 충족했다면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또는 작성해야 한다. 한·인도 CEPA에서는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을 갖춘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발급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인도의 경우 인도수출검사위원회(Export Inspection Council of India), 수산물수출개발원(Marine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 섬유위원회(Textiles committee)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2) 부가가치기준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on)은 수출 대상 물품에 대해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는지를 계산해 그 부가가치의 창출이 각 협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국가를 원산지(역내산) 국가로 인정해주는 기준으로서 FTA 원산지 판정의 대상이 되는 수출(공급)물품과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원재료의 가격을 통해 부가가치비율을 산출한다.

부가가치기준은 협정에 따라 다른 산출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역내가가 일정 비율 이상일 것을 규정하는 RVC법(Regional Value Contents Method)과 역외가가 일정 수준 이하일 것이 규정되는 MC법(iMport Contents Method)이 있다.

RVC법과 MC법은 결국 계산식이 다른 것인데, 선택할 수는 없고 협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한·인도 CEPA는 RVC법을 활용해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한다.

RVC법은 집적법(BU, Build Up Method), 공제법(BD, Build Down Method), 순원가법(NC, Net Cost Method)로 나뉘고 있으며, 일반적인 RVC 활용협정에서 집적법과 공제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한·인도 CEPA는 공제법을 통해서만 부가가치기준 적용이 가능하다.

(3)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중 제3국 송장 발행 건

FTA는 협정체결국 간의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한 제도로써 원칙적으로는 해당 협정의 영역에 속해 있는 당사자 간의 거래에서만 활용될 수 있다. 이를 ‘거래당사자 요건’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국제물품매매계약은 아주 다양한 형태로 이뤄질 수 있으며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 중개인이나 대리인이 개입할 수도 있다. 또한 직접 소유권 이전 등의 위험을 부담하며 무역거래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중계무역).

중계무역의 경우 2장 이상의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이 발행될 수 있고 이를 제3국 송장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제3국에 소재한 수출자(예 : 홍콩에 소재한 수출자)가 중간에 개입한 거래라고 하더라도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FTA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거래당사자의 확장’이라고 부른다.

한·인도 CEPA에서는 매매송장이 제3국에 소재하는 운영인에 의해 또는 그 운영인의 계산으로 수출자에 의해 발급된 경우 그 상품이 제3장(원산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를 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품의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송장 발행’임과 송장을 발행하는 운영인의 이름, 주소 및 국가와 같은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협정에 따라 제3국 송장이 발행되는 건에 대해 원산지증명서에 관련 정보를 무조건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는 다르다. 한·인도 CEPA는 제3국 송장이 발행됐다면 관련 정보를 무조건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인도 CEPA에서는 부속서 4-나에서 원산지증명서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국 송장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4. ☐ Third country invoicing(name, address, country)

제3국 송장 발행 : 제3국의 운영인이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 ‘제3국 송장’란에 (√)로 표시하고 송장을 발행한 회사 또는 운영인의 이름·주소 및 국가 등의 정보를 제14 란에 기재한다.

3. 질문/답변 사례에 대한 해석

(1) 질문의 요지

질문의 내용에서는 총 4명의 당사자[인도 제조업체(A), 홍콩 대행자(홍콩대리점, B), 홍콩 대행자(D에게 최종적으로 인보이스 발행, C), 한국의 수입자(D)]가 존재하며 이들 간에 3건의 거래가 발생(A→B, B→C, C→D)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인도의 제조자(수출자)와 한국의 수입자 사이에서 2건의 추가 거래가 이뤄졌고 총 3건의 송장(invoice)이 발행된 것이다. 질문의 해석을 위해서는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된 해당 물품에 대해 ① 어떠한 송장이 제3국 송장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② 어떠한 송장가격을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에 작성할지, ③ 어떠한 가격으로 부가가치비율을 산정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2) 제3국 송장

한·인도 CEPA에서는 매매송장이 제3국에 소재하는 운영인(an operator located in a third country)에 의해 또는 그 운영인의 계산(the account of the said operator)으로 수출자에 의해 발급된 경우 그 상품이 제3장(원산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를 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인도 CEPA에서 당사국들은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인도)을 말하며, 제3국이란 당사국이 아닌 다른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홍콩 대행자(홍콩대리점, B), 홍콩 대행자(D에게 최종적으로 인보이스 발행, C)이 발행한 2건의 송장은 제3국 송장이 되는데, 협정 및 지침 등에서는 복수의 거래가 있는 경우 어떠한 제3국 송장의 정보를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본 사례에서의 답변에서는 인도 A社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송장을 발행한 홍콩 B社가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돼야 할 제3국의 회사에 해당할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책임이 있는 A社가 C社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안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최종 송장 발행자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규정한다면 본 질문/답변 사례에서 더 나아가서 수많은 거래(예를 들어 인도의 제조자로부터 한국의 수입자가 물품을 수입하기까지 10건의 중간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A社は 최종 송장 발행 회사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A社가 확인하고 정보를 알 수 있는 B社에 대한 정보가 기재돼야 할 것이다.

(3) 제3국 송장 발행 건에 대한 FOB 가격 기재 가능 여부

해당 사안은 부가가치기준을 통한 원산지판정 후 제3국 송장에 의한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원 수출자의 FOB 가격을 작성할지, 제3국 송장에 의한 FOB 가격을 작성할지의 문제다.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정하고 있으며, 부속서 4-나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에 포함된 견본 및 기재요령과 합치되게 영어로 작성되도록 요구되고 있으며(통일서식), 그 중 원산지증명서 제9번란[Gross weight and value(FOB)]에는 FOB 가격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대한 방법은 유사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차이가 존재한다. FOB 가격 작성에 관해서도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AK FORM)에서는 역내가치포함비율(RVC) 기준이 적용되는 때만 제9란에 FOB 가치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인도 CEPA의 경우 RVC 적용에 대해서만 FOB 가격을 기재하도록 두지 않고, 모든 원산지증명서 발급 건에 FOB 가격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HS Code (6 digit)	8.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9. Gross weight and value(FOB)	10. Origin criterion	11. Number and date of Invoices

■ 원산지증명서 작성방법

제9란에는 해당 물품의 총 중량 및 본선인도가격을 적습니다.

제3국 송장이 발생하는 중계무역 등 제3자가 거래에 개입하는 경우 인도의 FOB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한국의 수입자는 물품을 수입하게 될 것이고, 제3국의 수출자는 수출당사국의 수출자와 자신의 거래가격을 최종 수입자에게 노출시키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 한·ASEAN FTA에서는 2012년 한·ASEAN FTA 제7차 이행위원회 및 제16차 관세위원회 합의 결과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작성 시 생산자가 발행한 송장 가격(FOB) 또는 제3국에서 발행된 송장 가격(FOB)을 기재할 수 있게 됐다.

제16차 관세 및 원산지 이행위원회(AK-STROO)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제	내용
FOB value reflected in CO Form AK in case of third country Invoicing	The Meeting noted that all parties agreed with Korea's proposal to accept either the 'manufacturer's FOB value' or 'any third country's FOB value' in the Form AK provided that Korea's Form AK would not be rejected if any of the two FOB value be reflected

다만 한·인도 CEPA는 협정의 이행과정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결국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에는 원 수출자 A의 FOB 가격이 작성돼야 한다. 실무적으로 원 송장의 가격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중간거래당사자들이 자신의 송장가격(제3국 송장)을 기재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다만, 우리나라와 인도와의 합의가 따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아직까지는 수출자의 FOB 가격이 기재돼야 할 것이다.

(4) 어떠한 가격으로 부가가치비율 산정을 할지

한·인도 CEPA에서는 완제품 가격의 기준을 FOB(본선인도) 가격으로 하고 있는데, FOB 가격이란 상품이 지정된 수출항에서 운반기로 선적될 때, 상품의 가격과 운반기로 상품을 가져오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 상품에 대해 수출업자에게 실제로 지불됐거나 지불해야 할 가격을 말하며 이 가격산정은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정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복수의 송장이 발행되는 상황에서의 FOB 가격은 모두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처음의 수출자(인도네시아)가 제3국의 수출자에게 FOB 1만 달러로 판매했고 제3국(홍콩)의 수출자가 FOB 1만 5,000달러에 최종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개념상 제3국 송장의 가격을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 가격으로 인정한다면 부가가치비율이 계속 해서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

FTA에서는 제3국 송장 가격을 통한 원산지 판정을 금지하고 있다. 즉, 부가가치기준의 계산은 FOB 1만 달러를 기준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인도 CEPA는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존재하지 않지만, 한·ASEAN FTA 집행지침에서는 원산지 물품인지의 여부는 수출국에서 최종

결정되고 제3국 당사자와 수입자 간의 거래가격에 의해 원산지가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 사례 또한 존재한다.

청구번호 조심 2020관0141(2020.12.7.)	
제목	쟁점물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봐 한·ASEAN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결정요지	제3국의 FOB 금액으로 RVC를 계산할 경우 협정당사국이 아닌 비당사국의 부가가치가 산정돼 원산지가 왜곡되므로 RVC는 최초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FOB 금액을 기초로 계산해야 하고, 이러한 내용은 한·ASEAN FTA 집행지침에도 잘 나타나 있는 점, 이 건에서 수출자의 FOB 금액을 기초로 RVC를 계산할 경우 쟁점물품은 한·ASEAN FTA에서 규정한 RVC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춰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본 사항은 한·ASEAN FTA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FTA의 부가가치기준 적용에서 따라야 하는 사항이다.

관세청 답변사례에 따르면, 한·미 FTA 역내가치포함비율 계산을 위한 조정가치 산정 시에는 제3국에서 발생한 조정가치가 아닌 계약상대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조정가치로 계산해야 한다고 안내한 바 있다.

한·인도 CEPA는 특히 대부분의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기준(RVC 35%)을 적용해야 하는 협정으로 부가가치비율을 정확히 산정하고 원산지 증명을 진행해야 하므로 다른 협정에 비해 부가가치기준에 대한 중요성이 높은 편이다. 제3국 송장 발행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경우 제3국 송장가격을 통한 원산지 판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5) 질문/답변 내용 정리

본 질문/답변 사례는 물품이 인도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과정에서 총 4명의 당사자가 개입해 국제무역을 진행한 건이다.

한·인도 CEPA에서는 제3국에 대한 정의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인도 CEPA에서 당사국은 대한민국 또는 인도를 말하며, 제3국이란 당사국이 아닌 다른 국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홍콩에서 송장을 발행한 B가 C에게 발행한 송장이 제3국 송장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다만 한·인도 CEPA 목적상 A가 발급신청을 하는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에는 홍콩

B社の 정보가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될 것이다.

또한 해당 제3국 송장 가격이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에 작성될 수 없는데, 한·ASEAN FTA와 같이 제3국 송장 가격의 기재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홍콩에서 발행된 송장가격(제3국 송장가격)에 따라 부가가치기준 판정을 진행할 수는 없으며, 부가가치기준 충족 여부는 수출당사국 내 FOB 가격을 토대로 이뤄져야 함을 확인해야 한다.

질의 응답 사례

본 지면에서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을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 고객지원센터

면세 / 재수출면세 가능 여부

해외 A업체로부터 수리를 의뢰 받아 우리나라로 수입해 수리를 완료했는데, 이때 A업체가 아닌 다른 나라의 B업체로 수출해도 재수출면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대상물품 중 수리를 위한 물품은 수리를 위해 일시 수입한 물품의 원래 수리요청자에게 다시 수출된 경우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FTA / 한·ASEAN FTA 원산지 적용 관련

중국에서 강화유리(HS Code 제7007.19호)를 수입해, 유리 후면에 인쇄공정을 거쳐 인도네시아로 수출(동일 세번)하는 경우 무관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HS Code 제7007.19호의 한·ASEAN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확인됩니다.

■ 한·ASEAN FTA 원산지 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중국에서 HS Code 제7007.19호를 수입해 인쇄 후 HS Code 제700.19호로 인도네시아에 수출한다면, 상기 제1호는 불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단순 인쇄일 경우 불인정 공정에 해당될 수 있으며,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충족하는 원산지 상품이어야 합니다.

품목분류 / 초코파이의 품목분류

초코파이는 어느 호에 분류하나요?

문의한 물품이 ‘페이스트리와 케이크’에 해당한다면, 제1905.90-103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제1905호 해설서에서는 “(10) 페이스트리와 케이크 : 고운 가루·전분류·버터나 그 밖의 지방·설탕·밀크·크림·계란·코코아·초콜릿·커피·벌꿀·과실·리큐르·브랜드·알부민·치즈·육(肉)·어류·향미료·효모(yeast)나 그 밖의 팽창제(leavening agent) 등과 같은 성분을 함유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 품목분류 사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제1905.90-1030호 분류 사례

① 품명 : Cake; Milka choco snack

② 물품 설명

- 밀가루, 우유, 설탕, 계란, 식물성유지, 팽창제 등으로 만든 케이크시트 사이에 크림을 충전한 직육면체 상의 표면을 초콜릿으로 완전히 도포한 것을 플라스틱제 팩에 내포장 후 종이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2g×4)
- 용도 : 식용

③ 결정 사유

제18류 주 제1호에 “이 류에서 제0403호·제1901호·제1904호·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제3004호의 조제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 없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HS해설서에 “(10) 파이와 케이크 : 고운 가루·전분류·버터나 그 밖의 지방·설탕·밀크·크림·계란·코코아·초콜릿·커피·벌꿀·과실·리큐르·브랜드·알부민·치즈·육(肉)·어류·향미료·이스트(yeast)나 그 밖의 팽창제(leavening agents) 등과 같은 성분을 함유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밀가루, 우유, 설탕, 계란, 식물성유지, 팽창제 등으로 만든 케이크시트 사이에 크림을 충전한 직육면체상의 표면을 초콜릿으로 완전히 도포한 것을 플라스틱제 팩에 내포장 후 종이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파이와 케이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따른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5.90-1030호에 분류함.

「관세법」상 장기부과제척기간(10년)과 관세포탈죄 및 가격조작죄의 상관관계

- 조세심판원 2023관0026(2024.1.23.) 사건 중심으로 -

최 천 식 | 관세인재개발원 교수

1. 처분경위

청구법인은 향료원료 가공·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미국 생산자 A社가 제조한 향료원료(쟁점물품)를 미국 수출자 B社(쟁점 수출자)로부터 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니코틴과 그 염’이 분류되는 HSK 제2939.79-1000호로 해서 한·미 FTA에 따른 관세율 0%, 부가가치세율 10%로 수입신고했고 통관지 세관장은 이를 수리했다.

처분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죄) 및 「관세법」 위반(가격조작죄) 여부에 대해 조사한 바,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2016년 국내에 여러 회사를 차명으로 설립한 후 직원에게 수출자를 통해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송품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물품 수입대금을 허위 송금하는 방법으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한 사실을 확인해 2022.5.25. 재산국외도피죄 및 가격조작죄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처분청은 2022.8.1. 수입신고 4건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과세전통지했다. 청구법인은 과세전통지에 대해 관세청에 2022.8.31.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관세청은 2022.9.6. 적부심사 제2022-25호 결정서(1차 결정서)에서 수입신고 1에 대한 과세전통지는 취소하고, 「관세법」 제30조 및 제35조에 따라 과세예정금액과 산정근거 및 근거조문을 명확하게 적시할 수 있도록 재조사 결정을 했고, 수입신고 2~4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참조해 적정한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심의를 보류했다.

처분청은 1차 결정서에 따라 재조사 후 E社(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실질적 운영)가 수입한 동종·동질물품인 신고단가를 수입신고 1의 신고단가로 적용해 2022.10.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고지(이하 ‘쟁점①처분’)했다. 또한 관세청은 제1차 결정서에서 심의가 보류된 이 건 수입신고 2~4에 대해 납세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2022.11.1. 적부심사 제2022-25호 결정서(2차 결정서)에서 「관세법」 제30조 및 제35조에 따라 과세예정금액과 그 산정근거 및 근거조문을 명확하게 적시할 수 있도록 재조사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라고 했다. 처분청은 2차 결정서에 따라 재조사한 후 2022.12.2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해 2023.1.6.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II.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의해 과세전통지가 취소됐는데도, 재조사 결과에 따른 별도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자체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1차 결정서에 따라 수입신고 1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취소됐으므로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부과할 과세예정 금액이 어떠한 근거로 산정됐는지 명확히 밝히면서 재차 과세전통지를 해서 청구법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어야 한다. 2차 결정서에 서도 수입신고 1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한 과세가격을 산정해 과세전통지를 하라는 취지이므로, 처분청은 쟁점②처분에 이르기 전 과세전통지를 했어야 한다. 이 건 과세전통지를 살펴보면, 경정 이유에 대해 단순히 “○○○을 수입하면서 물품가격을 조작해 저가로 신고했다”고 기재돼 있을 뿐 과세의 근거조항 및 산출 방식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도록 기재돼 있다. 2차 결정서는 이 건 과세전통지에 필수적 기재사항인 경정 이유에 관해 납세자가 예측할 수 없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재조사해 과세전통지를 새로 하라는 취지다.

(2) 수입신고 1 및 수입신고 2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 과세해 위법하다.

세관장이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수입 시기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 1 및 2의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2017.9.12. 및 2017.11.6.이나, 과세처분은 위 기산일로부터 5년을 도과한 2022.10.14. 및 2022.12.29.에 이뤄졌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봐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으로 사료되나, 쟁점물품은 새로 개발된 물질로서 청구법인을 제외한 제3자가 우리나라로 수입한 전례가 없는 물품이고, 청구법인이 미국 수출자와 거래한 사례가 쟁점물품의 거래사례가 되는 경우였기 때문에 거래가격 그대로 신고한 것에 불과하다. 게다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시 허위를 기재한 사실도 없으며, 송금내역도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거래행위를 포착하지 못한 위험도 없었다.

수입신고 1 및 2의 신고단가를 ○○○달러/kg으로 신고한 것과 관련해 처분청은 「관세법」 제35조를 적용해 2016.9.2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과 별도로 운영하던 E社가 수입한 동종·동질물품 신고단가를 적용해 처분했다. 이는 청구법인이 실제 신고단가를 ○○○달러/kg으로 지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유사 사례와 가격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쟁점 처분을 한 것일 뿐 청구법인의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개입된 사건이 아니다.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다면,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세 포탈죄로 검찰에 고발했어야 했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관세법」 제270조의2에 따른 가격조작죄 및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에 따른 재산국외도피죄의 혐의로만 고발했다. 또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23.4.20. 범죄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공소시효 도과를

원인으로 한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사용해 국외 판매자에게 송금한 사실이 전혀 없고, 금융자료를 조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

(3)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위법하다.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 따른 납세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처분청은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무엇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인지 알기 어렵다. 만약 처분청이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확인했다면 「관세법」 제31조를 적용해 과세하면 되고,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제30조 제4항에 따라 부인하면서 과세가격을 제35조를 적용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다.

청구법인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해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단가를 〇〇〇달러/kg으로 동일하게 신고했다. 수출자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社와 A社간 2016.3.21. 체결한 공급계약서에 따르면, F社は 2016.4.1.부터 2016.12.31.까지 생산자 A社로부터 총 300kg 이상을 1℥당 〇〇〇달러에 구매하고, F社가 2016.12.31.까지 A社로부터 총 300kg을 구매 완료하면 2017.1.1.부터는 A社로부터 1℥당 〇〇〇달러에 구매하기로 했다. 그리고 F社가 2016.12.31.까지 A社로부터 1℥당 〇〇〇달러 가격으로 300kg 이상을 구매하지 못한 경우 개발 및 시설비용으로 〇〇〇달러를 지불하도록 약정했고, 실제로 이를 지급했다.

결국 청구법인은 계약서에 따라 쟁점물품을 A社로부터 구입한 미국 수출자로부터 2016.9.20. 신고단가 〇〇〇달러/kg로, 2017.1.1. 이후 수입한 물품의 신고단가는 〇〇〇달러/kg으로 수입했고,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한 어떠한 부정한 행위도 개입되지 않았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단가에 운임과 가산금을 더하는 등 법령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했기 때문에 계약서와 수입신고 단가에 일부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7.9.12. G社로부터 단가를 〇〇〇달러/kg으로 신고했으므로, 청구법인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해서 수입하고 있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가격을 부인할 수 없다.

(4)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산정에 위법이 있다.

수입신고 1 및 2의 경우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가격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격이므로 「관세법」 제35조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삼을 수 없다. 과세전적 부심사 시 제출한 세관장 의견서에 따르면, 처분청이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으로 삼은 가격은 B社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E社와 미국 소재 G社 사이의 거래로서

특수관계에 있음이 명백하므로 정당한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정한 것은 특수관계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다.

그리고 처분청이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을 적용한다면 「관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를 신축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일 뿐, 적용을 완전히 배제할 것은 아니므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거나 적은 기간 중에 선적됐을 것의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는 동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요건을 신축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동종물품은 미국과 한국에서 특허 발명대 수입된 전례가 없고, 2016년경에 생산을 처음 시작해 소량 생산했기 때문에 각종 비용으로 인해 단가가 높게 형성된 시기였고, 2017년에는 최초 생산비용을 제외하고 대량 생산된 물량을 수입했기 때문에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처분청은 이러한 시장조건과 상관행 변동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1년 전 사례를 들어 이 건 수입신고 1 및 2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이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했고, 일회성 수입으로 인해 가격이 가장 높게 신고된 사례를 동종·동질 사례로 선정한 것은 「관세법」 제35조 및 동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처분청이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이라고 주장하는 가격은 B社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E社와 미국 소재 G社 사이의 거래로서 특수관계 법인이 신고한 사례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할 당시 미국 내 소매가격은 〇〇〇달러/kg이며, E社가 수입한 동종·동질물품의 수입신고는 수입신고 1 및 2의 수입신고보다 1년 전인 2016.9.20.에 있었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인 H社가 2020.12.17. 쟁점물품의 신고단가를 〇〇〇달러/kg으로 수입신고했고, 2021.6.16.에는 신고단가를 〇〇〇달러/kg으로 수입신고한 사례가 있다.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사례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수입신고 사례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저가신고를 했다고 해서 검찰에 고발할 때는 고가신고 위반에 해당하는 재산국외도피죄를 범했다는 모순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미국 수출자명의 송품장 단가를 조작해 저가신고를 했다는 의견이지만 해당 송품장을 위조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재산국외도피죄는 고가신고를 통해 실제 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국외로 송금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임에도, 처분청은 저가신고를 통해 재산국외도피죄를 저질렀다는 의견이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23.4.20. 「특정경제범죄법」 위반과 관련해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관세법」 위반과 관련해서 수입신고 1 및 2는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으로, 수입신고 3 및 4는 ‘일부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Ⅲ. 처분청 의견

(1) 이 건은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2조 제5호에 의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해 재조사 결정에 따른 해당 처분의 취소·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제1·2차 결정서에서 수입신고 1~4에 대해 재조사 결정을 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쟁점 처분을 한 것이므로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2) 쟁점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관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는 「관세법」 제270조의 관세포탈죄에서와 동일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며, 「관세법」 제270조에 규정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도 포함한다.¹⁾ 또한 쟁점 처분과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있었더라도 쟁점 처분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가격과 외화송금 내역에 차이가 분명히 있고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시와 외화송금 시 다른 송품장을 사용하거나 외화송금 시 사용한 송품장이 비슷한 시기에 작성됐음에도 상호 간에 상당한 단가 차이가 나는 등 허위로 송품장을 작성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저가 신고한 사실이 명확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에 적용돼야 하는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청구법인은 허위로 송품장을 작성했음이 분명하고 거래가격을 은폐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저가신고했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① 차명 운영하는 E사가 수입했을 때는 〇〇〇달러/kg으로 신고하다가, 자기명의 청구법인이 수입할 때는 〇〇〇달러/kg으로 현저히 낮게 신고한 점, ②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가격보다 과다 송금한 점, ③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시 세관에 제출한 송품장과 수입대금 외화송금 시 은행에 제출한 송품장의 수출자명·발행번호 체계·주소지 및 서식이 상이한 점, ④ 은행에 제출한 송품장 중에는 발행번호가 동일함에도 발행일자·수량·가격이 다르게 기재된 점, ⑤ 청구법인 직원으로 하여금 수출자 송품장 단가를 임의로 조작하게 해서 국내 차명 법인을 통해 쟁점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송품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물품 수입대금을 허위 송금한 점 등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관세법」 위반(가격조작죄)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1) 대법원 2000.2.8. 선고 99도3190 판결, 같은 뜻임.

(3) 쟁점 처분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관세법」 제31조 및 제35조에 따른 적법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했으나, 부인할 수 있는 사유가 없으므로 쟁점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물품 신고 가격 〇〇〇달러/kg은 동종·동질물품 단가인 〇〇〇달러/kg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를 과세 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해 청구법인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것이다. 수입신고 1 및 2의 과세가격은 청구법인과 별도로 운영하는 E社가 2016.9.20. 수입한 물품 중 쟁점물품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수입된 물품의 가격으로 확인돼 이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했다.

1) 처분청은 1차 결정서에 따라 수입신고 1에 대해 과세가격을 재조사하고자 2022.9.13. 청구법인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청구법인은 2022.9.27. 수입신고필증, 수입신고서, 송품장, 포장명세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제출자료를 검토했으나, 제출자료에는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이 증명되지 않았고, 수입신고 시와 외화송금 시 다른 송품장을 사용하고 특히 송품장 상호 간에 상당한 단가 차이가 있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수입신고 1의 수입신고 가격을 부인했다.

그리고 「관세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 60일과 선적일 후 60일을 합한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물품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고,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 및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찾을 수 없어 적용이 불가했고, 제33조에 따라 국내 판매가격 적용 여부에 대해서 검토했으나, 쟁점물품은 수입 후 제조가공에 투입되는 물품으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에서 판매된 물품이 아닌 점 등으로 적용할 수 없었고,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은 쟁점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그 가격 등 과세가격 산정을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적용이 불가했다.

결국 처분청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관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해당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해 해석·적용하는 방법. 다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이 유사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확대해 해석·적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했다.

2) 수입신고 2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 수출자가 제조업체로부터 매입한 가격 등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① 수입물품의 거래 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②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수입신고 2의 신고가격을 부인했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했다.

3) 수입신고 3 및 4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청구법인은 2022.11.18. 쟁점물품과 동종·동질물품으로 H社の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했다. 이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①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로서 외화송금 시 사용한 송품장이 비슷한 시기에 작성됐음에도 상호 간에 상당한 단가 차이가 나고, ②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므로 수입신고 3 및 4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했다. 따라서 미국으로부터 쟁점물품의 선적일 전 60일과 선적일 후 60일을 합한 기간 중에 선적돼 우리나라에 수입된 동종·동질물품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했고, 해당 물품의 인도조건이 청구법인의 수입물품 인도조건(EXW 조건)과 상이해 그 가격 차이를 조정한 후 과세가격으로 결정했다.

한편, 청구법인은 H社가 신고한 물품이 쟁점물품과 동종·동질물품이므로 해당 신고가격을 쟁점물품 과세가격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동종·동질물품을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신고 3 및 4의 쟁점물품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같은 시기의 H社の 수입물품을 비교해보면, 수입신고 3 및 수입신고 4의 ○○○ 성분은 100%이나, H社가 수입한 물품 ○○○ 성분은 10%로, 해당 물품은 쟁점물품과 같은 생산국(미국)에서 생산은 됐지만,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이라 보기 어려워 동종·동질물품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1 및 2와 관련해 E社가 수입신고한 단가를 과세가격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E社와 미국 수출자 G社の 거래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므로, 그 거래가격은 부인돼야 하고, 해당 가격은 이 건 수입신고 1 및 수입신고 2에 대한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하지 않으려면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 외에도 특수관계에 의해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는 점까지 확인이 돼야 한다. 청구법인의 주장은 B社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E社가 미국 수출자 G로부터 수입한 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왜곡됐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아무런 근거가 없고 스스로의 주장 취지와도 모순돼 타당한 이유가 없다.

5)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저가 신고했다면서 고가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재산국 외도피죄로 검찰에 고발한바, 처분청의 이러한 조치는 스스로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수입 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10%)를 회피해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물품가격을 조작해 실제가격보다 낮게 수입신고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에 해당돼 처분청은 2022.5.25.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가격조작죄), 동법 제279조 제1항(양벌규정)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따라서 이 건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격이 「관세법」 제30조 및 제35조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죄)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과 이 건 쟁점은 무관하다.

IV. 쟁점 사항

- ① 쟁점 처분의 절차상 적법 여부
- ②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지, 아니면 10년인지 여부
- ③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적법 여부

V. 조세심판원 결정 요지

(1) 쟁점①과 관련해 2022.9.6. 및 2022.11.1. 제1·2차 결정서에서 수입신고 1~4에 대해 재조사 결정을 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재조사를 해서 결과에 따라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6호, 제4항에 의해 과세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은 제1·2차 결정서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2022.9.29., 2022.11.28. 청구법인에게 각각 재조사 결과를 통보한 점 등에 비춰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는 조세포탈 의도를 갖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수출자 등에게 수입신고한 금액보다 과다 송금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한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처분청도 수입물품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0조가 아닌 제31조 및 제35조에 따라 재산정한 점, 청구법인이 조세포탈 의도를 갖고 외화를 송금할 때와 수입신고할 때에 서로 다른 송품장을 사용해 관세 등을 포탈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수입신고 3 및 4에 대한 과세가격 산정과 관련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인 H社가 2020.12.17. 쟁점물품 신고단가를 ○○○달러/kg으로 수입신고했고, 2021.6.16.에는 신고단가를 ○○○달러/kg으로 수입신고한 사례가 있는데,

처분청이 2021.1.4. 수입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달러/kg을 동종·동질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 수입가격은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가임이 인정되는 점, 청구법인은 신고가격이 사실임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그 소명이 부족한 점, 「관세법」 제31조에 따라 동종·동질물품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점, H社가 2020.12.17. 및 2021.6.16. 수입한 물품은 성분에서 각각 25%, 10%로 쟁점물품의 함량(100%)과 차이가 있어 동종·동질물품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선적일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세법」 제31조에 의거 입항일을 기준으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입신고 3 및 4의 입항일은 각각 2020.12.7. 및 2020.12.23.이고, 처분청이 수입신고 3 및 4와 동종·동질물품으로 판단한 2021.1.4. 수입된 물품 입항일이 2020.12.31.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해 경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 건 수입신고 1 및 수입신고 2와 관련해서는 쟁점②에서 부과제척기간이 5년으로 판단돼 청구주장이 인용됨에 따라 심리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VI. 대상 결정 평석

대상 결정 쟁점은 ① 과세전적부심 절차를 이행했는지의 절차상 적법 여부, ② 쟁점물품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인지 아니면 10년인지 여부, ③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적법 여부다. 이번 호에서는 쟁점 ①에 대해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절차 이행에 있어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③의 경우 청구법인은 거래가격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제1방법을 배제한 처분에 대해 문제점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 ②에 대해서만 검토하기로 한다.

(1) 일반 및 장기 부과제척기간의 의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이란 관세당국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정기간을 말한다. 따라서 관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관세당국은 더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고 납세의무도 소멸한다. 제척기간은 일정한 권리에 대해 그 존속기간을 정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²⁾ 이러한 목적으로 인해 관세부과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나 정지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2) 박윤직, <민법총칙(2000)>, 박영사, p.488.

1984년 세법 개정 전에는 국세 소멸 사유로 국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국세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대한 구분된 조문이 없어서 이에 대한 해석 다툼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84.8.4. 세법 개정을 통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국세부과제척기간 규정을 신설했다. 「관세법」은 1996.12.30. 법률 제5194호 개정을 통해 관세부과제척기간 규정을 신설(제25조의2)했는데 일반제척기간은 2년, 장기제척기간은 5년이였다. 이후 조세회피방지 등을 이유로 제척기간을 연장하려는 과세당국의 요구를 반영해 2013.8.13. 법률 제12027호 개정을 통해 일반제척기간은 5년, 장기제척기간은 10년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려는 노력은 조속한 법률관계를 통해 납세자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제척기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부정행위에 대해 장기제척기간 10년을 둔 것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단순 미신고와는 달리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사실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그로 인해 부과권 행사를 기대하기가 곤란하므로 부과권 행사 기간을 길게 두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대법원도 장기부과제척기간을 부여하는 취지는 과세요건 사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부과권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있는 것이지 부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³⁾

대법원은 조항의 규정형식, 입법취지 및 엄격해석의 원칙상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지 않는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결했다.⁴⁾ 국세청 유권해석⁵⁾에서도 ‘부정행위를 했으나 누적결손으로 법인세 포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에 대해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 “부정행위를 했으나 국세포탈이 없는 경우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2) 장기부과제척기간과 관세포탈죄의 관계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에는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제1항 제1호에서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3)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67 판결

4)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두16974 판결

5) 국세청 2019-법령해석기본-0314, 2019.4.22.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수입신고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범 처벌법」⁶⁾ 제3조(조세 포탈 등) 제1항에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기부과제척기간과 관세포탈죄 및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하기 위한 공통적 요소는 ‘부정한 행위’다. 관세포탈죄에서는 ‘거짓’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부정한 행위에 포섭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납세자가 속임수로 정당한 과세권 행사를 방해하면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린다. 의도하지 않고 실수를 범한 자와 속임수를 쓴 자는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이러한 속임수를 ‘부정한 행위’라 부른다.⁷⁾ 신고하지 않거나 꼭 내야 하는 세액보다 적게 신고했다고 해서 모두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숨기기 위해 부정한 행위를 썼다면 다르다. 이때 형사처벌을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추가적인 표지가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부정한 행위다.⁸⁾

대법원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⁹⁾ 이에 더해 적극적으로 은닉하려는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있어야 부정한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¹⁰⁾ 그리고 문제가 된 조세를 어떻게 확정하는지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를 두루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¹¹⁾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대표적 유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신고누락한 경우¹²⁾, 실제 장부 외에 매출액을 과소 계상한 이중장부를 기장해 세무신고를 한 경우¹³⁾, 매매대금을 과소신고하면서 매매대금을 과소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와 허위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¹⁴⁾ 등이 있다. 반면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6) 「조세범 처벌법」 제2조(정의)에서 관세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강성모, ‘조세법의 여러 영역에서 사용하는 부정한 행위의 범위(2023)’,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용역, p.256.

8) 윤지현, ‘명의신탁 또는 차명거래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2017)’, <계간세무사>, 한국세무사회, p.13.

9) 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도3797 판결, 2000.4.21. 선고 99도5355 판결 등 다수

10) 대법원 2007.8.23. 선고 2006도5041 판결, 2019.9.9. 선고 2019두31730 판결 등 다수

11) 대법원 2014.2.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12) 대법원 2000.2.8. 선고 99도5191 판결

13) 대법원 2002.9.24. 선고 2002도2569 판결

14)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10419 판결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¹⁵⁾, 단순한 신고누락¹⁶⁾, 국가의 조세수입과 무관한 신고누락¹⁷⁾ 등이 있다.

부정한 행위와 관세포탈 결과는 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이지만 부정한 행위와 조세포탈은 별개의 요건이다. 즉 부정한 행위가 없거나 관세포탈이라는 결과가 없으면 관세포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¹⁸⁾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해야 하므로 부정한 행위와 조세포탈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그 전제는 부정한 행위와 조세포탈은 구별된다는 것이다. 관세포탈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행위와 관세포탈의 결과를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관세포탈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며 목적범은 아니기 때문이다.¹⁹⁾

목적범은 고의 이외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대부분의 범죄는 고의범으로, 구성요건에 정의된 행위를 고의로 하기만 했으면 법익 침해의 결과를 불러올 목적이 없었어도 범죄가 성립한다. 이에 반해 목적범이란 구성요건에 정의된 그 행위를 고의로 했을 뿐만 아니라 초과구성요건으로 법익 침해 결과를 불러올 목적이 있었다는 것까지 입증돼야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대법원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부정한 행위라고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해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에 조세포탈의 범위가 인정된다고 했다.²⁰⁾

반면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행위와 이에 따른 조세포탈의 결과가 있으면 되는 것으로 조세포탈죄가 요구하고 있는 ‘인식’은 없어도 된다.²¹⁾ 대법원은 법인의 대표자나 사실상 대표자가 아닌 사용인 등이 납세자 본인을 속여 납세자 본인이 사기, 배임 등과 같은 범죄 피해자가 됐더라도 납세자 본인에 대한 국세에 관해서는 부과제척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²²⁾ 이 사건에서 납세자 본인은 부정한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기제척기간과 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비록 관세포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기초적 동일한 사실관계이라 하더라도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은 별개로 이뤄질 수 있다.

15) 대법원 2002.6.11. 선고 99도2914 판결

16) 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도3797 판결

17) 대법원 2005.1.14. 선고 2002도5411 판결

18) 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19) 같은 뜻 ; 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도817 판결

20) 대법원 2011.6.30. 선고 2010도10968 판결 ; 2014.5.29. 선고 2012도11972 판결

21) 강성모·박훈, ‘2014년도 국세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 판례회고(2015)’, <조세법연구> 제21집 제1호, 한국세법학회, p.383.

22) 대법원 2021.2.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대법원 판례²³⁾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일정한 법규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 사실이 되고 동시에 형사법규의 위반사실이 되는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와 대상 및 목적을 달리하므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범죄사실 증명에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심증을 요하는 형사재판을 전제로 한 것일 뿐 요건사실의 입증증명에서 증거의 상대적 우월로 족한 행정재판에서는 원고가 수입신고 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수입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위 형사판결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²⁴⁾

이와 같이 기초적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출발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권력적 기초와 대상 및 목적을 달리하고 있는바, 관세포탈죄의 경우 관세포탈 의도가 있어야 하는 반면, 장기부과제척기간은 조세포탈의 결과가 있으면 되고 이에 대한 인식이 없어도 된다는 점에서 비록 관세포탈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관세포탈죄와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요구하는 2가지 공통적 요소는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와 그로 인해 관세포탈 결과 발생이다. 그러므로 위 2가지 요소에 충족되지 않으면 관세포탈죄와 장기부과제척기간은 적용할 수 없음은 명확하다.

(3) 「관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세법」 제4조에 따라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와 그 가산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을 함에 있어서 절차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관세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있어서도 「관세법」상 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된다.²⁵⁾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제1항에서 일반제척기간은 5년, 장기제척기간은 10년으로 「관세법」과 동일하다. 따라서 「관세법」 규정을 적용하든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하든 다를 실익은 없다. 그러나 세율 및 과세표준에 대한 내국세의 실체적 요건은 반드시 내국세법을 적용해야 한다.

대법원은 “수입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 본세를 부과할 때 부과대상이나 세액 산정을 위한 실체적 과세요건에 관해 「부가가치세법」 등 개별 내국세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돼야 하므로 가산세에 대해서도 그 부과대상이나 세액 산정을 위한 실체적 과세요건에 관해서 「부가가치세법」 등 개별 세법에 정한 가산세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결했다.²⁶⁾

23) 대법원 2017.6.19. 선고 2015두59808 판결 등

24) 서울행정법원 2001.11.14. 선고 2001구합10300 판결

25) 같은 뜻 ; 조세심판원 조심2013관0193(2013.12.16.), 대법원 2022.12.1. 선고 2022두53112 판결

26) 대법원 2006.3.9. 선고 2005두10125 판결

부가가치세의 제척기간은 「관세법」 제4조를 적용할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포탈행위에 대해 「관세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내국세 포탈행위를 규율하는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할 것인지는 쟁점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쟁점물품은 한·미 FTA를 적용받아 관세는 없고 단지 부가가치세만 있기 때문이다. 「관세법」과 「조세범 처벌법」은 징역 및 벌금에서 형량 차이가 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제1항 제1호에서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수입신고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준거법을 어떤 법으로 하느냐에 따라 청구법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에 차이가 있다.

관세포탈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국가재정확보에 있으므로 관세포탈행위로 인해 국가재정수입을 감소시키는 관세포탈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본죄가 성립된다. 본죄는 관세포탈한 경우에 성립되므로 관세 이외의 내국세(부가가치세 등)만 포탈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²⁷⁾ 부가가치세액은 과세가격에 관세 등을 합한 금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해 산출되기 때문에 과세가격이나 관세율이 저가나 저율로 신고 수입되면 당연히 부가가치세액도 낮게 산출된다. 따라서 관세를 포탈한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 등의 포탈도 수반된다. 서울지방검찰청은 관세당국이 관세 이외의 내국세포탈에 대해 수사권이 없어 관세포탈의 점만 의ולה 송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내국세포탈의 점에 대해 수사함이 상당하다고 했다.²⁸⁾ 이러한 점에서 대상 결정의 부가가치세 포탈행위는 「관세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이 적용돼야 할 것이다.

(4) 가격조작죄 법리 및 관세포탈죄의 경합문제

「관세법」 제270조의2의 가격조작죄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목적범 형식으로 갖추고 있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 이외에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목적을 요구한다. 가격조작죄가 종래 허위신고죄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 중에서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 가격을 조작해 신고하는 행위를 가중해 처벌하기 위해 2013년에 신설된 규정이다.

27) 박영기, <관세제재법(2009)>, 세창출판사, p.292.

28) 서울지방검찰청, <관세형벌법(1994)>, p.63.

본죄 신설 이전에는 고가신고 방식의 가격조작은 단순 허위신고죄로 처벌돼 처벌수준이 미미했고,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입 가격조작죄(「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9호²⁹⁾)는 외화도피 목적인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해 공공재원 편취, 내국세 탈세, 국가예산 편취 등 목적으로 수출입 가격 조작이 이뤄진 경우 처벌의 공백이 있었다. 본죄 신설로 수출입가격조작을 이용한 새로운 범죄가 발생했을 때 관련 법률에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본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무역 주체가 보조금 부정수급, 무역금융 편취, 법인세 면탈 등 부당한 목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가격을 사실과 달리 높게 또는 낮게 거짓 신고하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다.

대법원이 가격조작죄로 인정한 사례로 “쟁점물품 수출가격을 고가로 부풀려 신고하고 신고된 가격에 의한 수출대금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하거나 담보로 대출받는 등 조작된 수출가격에 의한 수출대금채권을 이용해 금원을 편취한 것은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해 신고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³⁰⁾

가격조작죄와 관세포탈죄는 모두 납세자가 가격조작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두 죄의 경합은 법조경합³¹⁾에 해당돼 기초적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동시에 두 죄를 적용할 수 없다. 수입신고 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가격을 부당하게 낮게 신고하는 행위(예컨대 10만 달러의 수입물품을 고의로 5만 달러로 신고해서 관세를 적게 내는 경우)를 보면, 납세자는 수입가격 조작을 통한 탈세로 인해 결과적으로 탈세한 금액만큼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된다.

이때 가격조작을 통한 부당이득이 발생했으므로 외형상 관세포탈죄와 가격조작죄가 경합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³²⁾ 하지만 단지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함으로써 그 수입물품 자체에서 얻게 되는 탈세한 금액 자체를 재산상의 부당이득으로 보지 않는다. 가격조작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탈세금액이 아닌 저가신고에 따른 재산상의 부당이득 목적이 있어야 한다. 저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대부분 탈세 그 자체가 목적이며 탈세를 통한 다른 목적을 실현하려는 것은 찾기 보기 어렵다. 가격조작죄는 대부분 수입물품을 고가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예컨대 10만 달러 물품을 20만 달러로 수입한 것처럼 신고해 해외에 지급하고 해외에 있는 자신의 계좌로 10만 달러를 빼돌리는 경우 가격조작죄가 적용될 수 있다.

29)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수출입물품 가격을 조작한 무역거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 수입, 경유, 환적 또는 중개하는 물품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0)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도8130 판결

31) 법조경합이란 한 개 또는 수 개의 행위가 수 개의 구성요건을 실현하지만, 구성요건 상호 간의 관계에 따라 한 개의 구성요건만 적용되고 다른 구성요건을 배척해 일죄가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특별관계·보충관계·흡수관계·택일관계 등 4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32) 관세포탈죄가 가격조작죄에 비해 형량이 높다.

물론 가격을 낮게 조작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수출물품 가격조작이 대표적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수출물품 가격을 실제보다 저가로 신고해 수리받고 저가신고한 수출물품 가격을 바탕으로 임가공품 수입 시 실제보다 저가로 신고해 관세 등을 포탈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 가격조작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³³⁾ 이 사건의 경우 수출물품 가격을 실제보다 저가로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는 가격조작죄가 적용되고 임가공품 수입 시 실제보다 저가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세포탈죄가 적용된다.

해외 임가공물품의 과세가격은 부품가격(수출 자재+현지 구매 자재)+임가공비+기타 비용(운임과 보험료 등)으로 구성된다. 이때 수입자가 무상으로 공급한 부품은 관세평가상 생산지원에 해당돼 임가공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된다.³⁴⁾ 따라서 수입자가 수출한 부품 가격을 낮게 신고할 수록 임가공물품의 과세가격은 비례적으로 낮게 평가된다. 임가공물품의 탈세 목적으로 생산지원한 부품 수출가격을 낮게 신고할 경우 가격조작죄가 성립하게 된다.

(5) 대상 결정 검토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행위와 이에 따른 조세포탈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 처분청이 부정한 행위로 보는 근거는 ① 차명 운영하는 E社가 수입했을 때는 〇〇〇달러/kg으로 신고하다가 자기 명의 청구법인이 수입할 때는 〇〇〇달러/kg으로 현저히 낮게 신고한 점, ②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정점물품의 수입신고 가격보다 과다 송금한 점, ③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시 세관에 제출한 송품장과 수입대금 외화송금 시 은행에 제출한 송품장의 수출자명, 발행번호 체계, 주소지 및 서식이 상이한 점, ④ 은행에 제출한 송품장 중에는 발행번호가 동일함에도 발행일자, 수량, 가격이 다르게 기재된 점, ⑤ 청구법인 직원으로 하여금 수출자 송품장 단가를 임의로 조작하게 해서 국내 차명법인을 통해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송품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물품 수입대금을 허위 송금한 점이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수출자 등에게 수입신고한 금액보다 과다 송금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한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처분청도 수입물품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0조가 아닌 제31조 및 제35조에 따라 재산정한 점, 청구법인이 조세포탈 의도를 갖고 외화를 송금할 때와 수입신고할 때 서로 다른 송품장을 사용해 관세 등을 포탈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청구법인의 손을 들어 줬다.

33) 인천지방법원 2018.4.5. 선고 2017고단8683 판결

34)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원·부자재가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수출한 물품과 수입한 물품의 HS 코드 10단위가 일치하는 등의 일정한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해외 임가공 감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처분청의 주장 이유 중 ① 쟁점물품이 차명회사가 수입한 물품에 비해 현저히 낮게 신고했다고 주장을 살펴보면, 「WTO 관세평가협정」은 BDV 평가의 일물일가(一物一價)의 관념적 가격 대신에 거래당사자 간의 실거래가격을 인정하는 일물다가(一物多價)의 실증적 가격을 채택했다. 따라서 차명회사가 수입한 가격과 청구법인이 수입한 가격 모두 거래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거래가격을 채택하고 있는 이상 거래가격을 배제해야 하려면 배제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배제사유가 협정에 충족돼야 한다.³⁵⁾ 단지 쟁점물품이 동종·동질물품에 비해 현저히 낮게 수입신고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부정한 행위가 개입됐다고 볼 수는 없다. 정상가격 개념으로 본다면 청구법인이 저가 신고한 것이 아닌 오히려 차명회사가 고가 신고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처분청은 ②·③·④·⑤의 이유를 통해 청구법인이 송금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고, 그 결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가격보다 과다 송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 부정한 행위와 이에 따른 조세포탈의 결과가 있어야 하고 양자 간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②·③·④·⑤는 청구법인의 부정한 행위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부정한 행위로 인해 송금한 금액과 수입한 가격 차이에 따른 조세포탈의 결과를 초래해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송금과정에서 밝혀진 실제지급금액이 아닌, 동종·동질물품에 대한 평가금액을 적용해 그 차액을 추정한 것이다. 더욱이 수입신고 가격보다 과다 송금한 경우 관세포탈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부정한 행위는 있으나 조세포탈의 결과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조세심판원도 처분청이 쟁점물품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0조가 아닌 제31조 및 제35조에 따라 재산정한 점을 지적했다. 처분청 역시 「관세법」 또는 「조세법 처벌법」에 근거로 한 조세포탈죄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대상 결정 중 수입신고 1과 2는 청구법인의 부정한 행위를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에 따른 조세포탈의 결과가 없기 때문에 원칙으로 돌아가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된다.³⁶⁾

다음으로 대상 결정과는 별개로 처분청은 가격조작죄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한 것이 적정한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내에 여러 회사를 차명으로 설립한 후 직원에게 허위 송품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물품 수입대금을 허위 송금하는 방법으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도피했고 수입 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10%)를 회피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물품가격을 조작해 실제가격보다 낮게 수입신고했다고 해서 「관세법」 제270조의2 제3호(가격조작죄)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다.

35) 요컨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조건과 사정이 있는 경우, 객관적으로 수량화할 수 없는 처분이나 사용상 제한 및 사후귀속이 있는 경우에 해당돼야 한다.

36) 같은 뜻 ;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두16974 판결

가격조작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재화 수입’이라 보고 세관장은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다. 재화를 외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해외수출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할 수 없으므로 세관장이 대신해 부가가치세를 수입자로부터 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해 주는 것이다. 수입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해 기존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 결국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액이므로 수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셈이며 수입물품을 소비하는 최종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 구조상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실익은 없다.

처분청이 부가가치세(10%)를 회피해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납세자는 수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전단계세액공제법’에 따라 추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단지 부가가치세의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사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 하더라도 이를 가격조작죄에서 규정하는 ‘재산상의 부당이득’으로 볼 수도 없다. 다만, 부가가치세 취득이 아닌 외화도피 목적으로 수출입물품 가격을 조작했다면 「관세법」(제270조의2) 또는 「대외무역법」(제53조 제2항 제9호)에 따른 수출입 가격조작죄를 적용할 여지는 있다고 하겠다.

VII. 맺는 말

관세포탈은 관세평가 제1방법을 원칙으로 해서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가격보다 해외 수출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이 높을 때 발생한다. 그런데 수입물품 가격을 동종·동질물품 가격 등 관세평가 제2방법 이하의 관념적·정상적 가격평가방법을 사용한 경우 관세포탈죄를 적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제2방법 이하의 가격은 정상가격 개념이 녹아져 있고 평가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은 다양하게 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세당국이 수입신고 가격과 실제송금한 가격 차이를 자료를 통해 부정한 행위가 개입됐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관세포탈죄를 적용될 수 없으며 아울러 장기제척기간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

다음으로 가격조작죄 적용 여부를 보면 가격조작죄의 핵심요건인 가격조작(造作)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거래가격을 인위적으로 고가 또는 저가로 조작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격조작을 통한 목적범임을 밝히는 것이 매우 어렵거니와 가격조작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에서 가격조작죄를 적용할 경우 죄형법정주의에

기초한 엄격 해석원칙에 비취 신중함을 기할 필요가 있다.

대상 결정의 경우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을 실제지급가격이라고 본다면 실제지급가격보다 높게 조작해야 가격조작죄가 성립된다. 이때에는 조세포탈의 결과가 없기 때문에 조세포탈죄 또는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반면 청구법인이 송금한 금액이 실제지급금액이라면 수입신고 시 송금한 금액보다 낮게 수입신고해야 조세포탈 결과가 발생하므로 이때에는 장기부과제척기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가격조작죄는 적용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장기부과제척기간과 가격조작죄는 어느 정도 역(逆)상관관계에 놓여 있다. 따라서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상황에서 장기부과제척기간과 가격조작죄 모두 적용할 수 있다는 처분청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미래 모빌리티의 품목분류(2)

김 성 채 | PWC 관세법인

이 글에서는 지난 호(통권 제2080호, 2024.4.29. 발간)에 이어 관세율표 제87류를 중심으로 미래 모빌리티의 품목분류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4. 1인 모빌리티

가. 1인 모빌리티의 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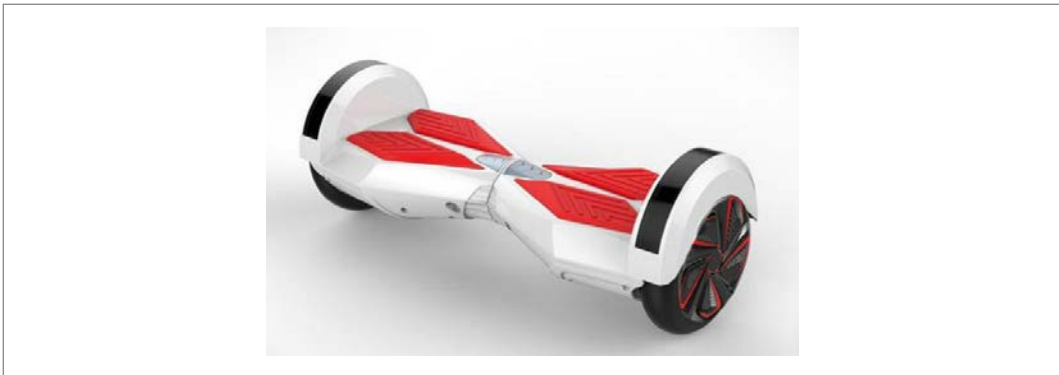
사람들과의 대면 접촉을 최대한 피해야 하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전기스쿠터 등 1인 모빌리티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대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으며 급성장했다. 또한 근거리 1인용에 적합한 교통수단으로 대형의 내연기관 엔진이 아닌 소형의 전기모터를 장착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에서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인정받기도 한다.

이러한 전기식 친환경 1인 모빌리티의 효시로 다음의 물품이 있다.



바퀴 두 개가 달린 전동식 교통수단으로 사람이 핸들을 잡은 채로 플랫폼 위에 서서 운전하는 형태다. 제38차 WCO HS위원회(2006년 9월)는 이 물품을 제8703호의 자동차로 볼 것인지, 제8711호의 물품으로 볼 것인지 검토했다. 제8711호에는 모터사이클, 모페드¹⁾,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 등이 분류되며,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바퀴가 두 개라는 특성이 있다. 다만 전통적인 모터사이클과 달리 바퀴가 (앞뒤가 아닌) 좌우로 두 개 배열된 형태이고, 사람이 차체 상단에 장착된 안장에 앉아서 운전하는 방식이 아니라 플랫폼 위에 서서 운전하는 형태의 물품을 제8711호의 모터사이클의 일종으로 볼 것인지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다. HS위원회는 논의 결과 투표를 거쳐 이 물품을 제8711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후 2016년 9월, 제58차 HS위원회는 두 바퀴가 달린 전기식 1인 모빌리티로 손잡이가 없는 보드 타입이며 사람이 선 채로 타서 균형을 잡으면서 이동하는 물품(electric hoverboard)을 마찬가지로 제8711호에 분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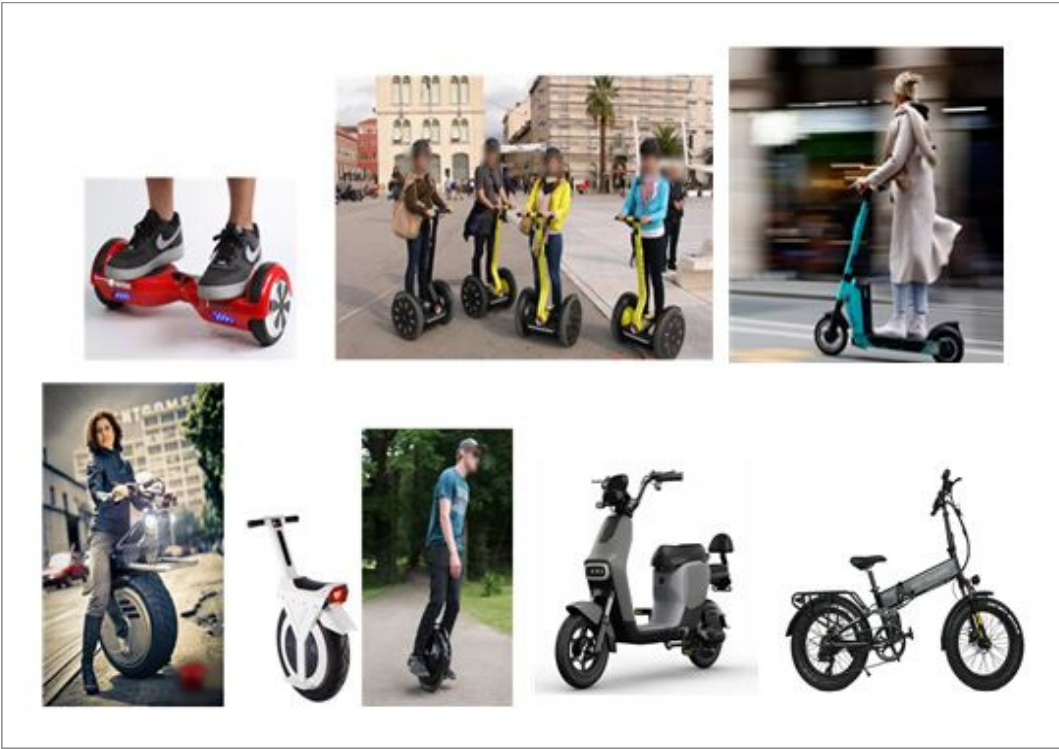
나. 전기모터를 장착한 1인 모빌리티의 품목분류와 HS 개정

제8711.60 소호에는 보조모터가 장착된 전기 자전거나 전기식 모페드, 구동용으로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모터를 장착한 모터사이클이나 스쿠터가 분류될 수 있다.

또한 HS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통적인 모터사이클이나 모페드의 형태, 즉 바퀴가 앞뒤로 두 개 달린 차체 위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 형태의 운전석이 있고 두 손으로 핸들 바를 잡고 운전하는 형태의 물품만이 아니라 손잡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며, 주로 플랫폼 위에 사람이 서서 운전하는 형태로서 자이로 센서 등 전자장치의 도움을 받거나 사람의 감각으로 균형을 잡는 형태의 1인 모빌리티로서 전기모터를 장착한 물품은 대부분 제8711.60 소호에 분류될 수 있다.

1) Motor와 pedal의 합성어로 내장된 엔진(또는 전기모터)과 페달 장치를 갖춘 탈것을 의미함.

● 제8711.60호에 분류되는 1인 모빌리티 ●



그리고 이러한 1인 모빌리티의 사용 및 거래 확대에 따라 중국은 제8711.60 소호를 세분화해 전기스쿠터를 별도 소호에 특개하자는 HS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현행	중국 제안
87.11 -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	
8711.10 - 실린더용량이 50cc 이하인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좌동>
... <중략> ...	
8711.50 - 실린더용량이 800cc를 초과하는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8711.60 - 추진용 전동기를 갖춘 것	- 추진용 전동기를 갖춘 것 8711.61 — 전기스쿠터(electric scooter) 8711.69 -- 기타
8711.90 - 기타	8711.90 - 기타

중국의 제안을 바탕으로 제8711호에서 전기식의 스쿠터 등 1인 모빌리티의 분류체계를 보다 상세하게 개편하기 위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며 큰 문제가 없는 한 이번 Review Cycle 이내에 개정안이 확정돼 2028년 HS에 새로운 분류체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전기스쿠터에 대한 HS 개정논의와 관련해서는 주간 관세무역정보 통권 제2065호(2024.1.1. 발간) 품목분류 해설을 참고하기 바란다].

5. 부분품

가.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의 부분품 차이

차량을 움직이기 위한 기본 구동체계를 연료와 내연기관 엔진이 아닌 배터리와 전기모터로 대체하는 전기차는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에 비해 구조가 단순해 부품 수가 대폭적으로 줄어든다. 특히 내연기관 자동차의 핵심 요소인 엔진과 연료공급체계가 삭제됨으로써 엄청난 종류의 부품이 필요 없어지게 된다. 또한 동력 전달·연결 체계도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단순해 짐에 따라 다수의 부품이 간소화된다.

●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부품 수 비교 ●

	내연기관차		전기차	
	부품 수(개)	비중(%)	부품 수(개)	비중(%)
엔진 부품	5,060	23	—	0
구동, 전달 및 제동장치 부품	4,180	19	2,280	19
차체 부품	3,300	15	2,880	24
서스펜션 및 제동 부품	3,300	15	2,880	24
기타	6,160	28	3,960	33
합계	22,000	100	12,000	100

※ 출처 : 수출입은행, PwC삼일경영 연구원

품목분류 관점에서는 전기차의 부품과 내연기관차의 부품이 분류상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위에서 말한 것처럼 내연기관 차량에 통상적으로 존재하는 다수의 부품이 전기차에서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부품의 예는 다음과 같다. 우선 HS 제8407호 및 제8409호에 분류되는 내연기관 엔진과 그 부분품, 실린더, 실린더 블록, 피스톤, 흡배기 밸브, 커넥팅 로드, 기화기와 연료 노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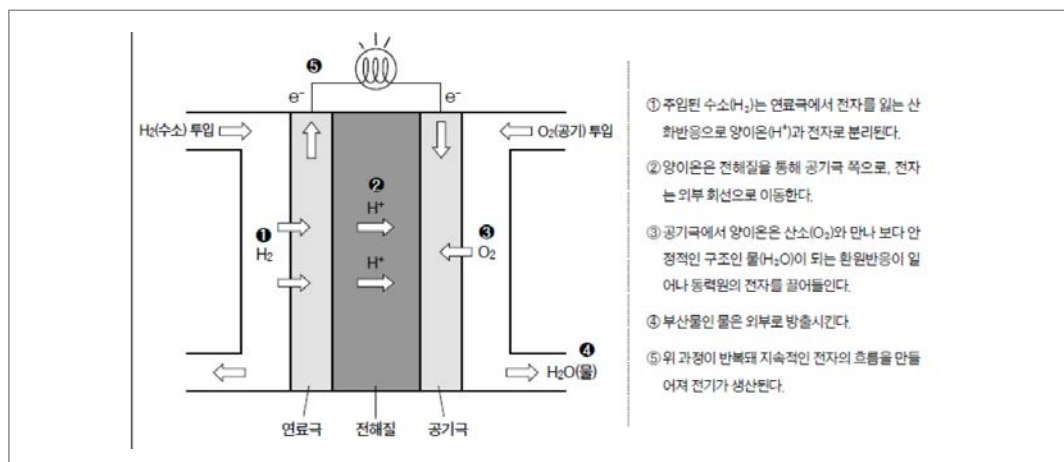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또한 제17부 주 제1호 마목에 따라 제17부에서 제외돼 제8483호로 분류되는 물품(엔진이나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 중 상당수가 전기 차량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크랭크나 크랭크 샤프트, 캠 샤프트, 플라이 휠, 폴리텐서너 등 엔진에 장착돼 동력 전달시스템의 첫 머리에 연결되는 부분품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아울러 제8511호에 포함되는 내연기관의 점화용·시동용 전기기기나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 등이 더이상 필요 없게 된다.

나. 전기차의 부분품

전기차 시대에 중요도가 높아지는 부분품은 당연히 전기모터(구동용)와 배터리일 것이다. 현재 관세율표 제8501호에서 전동기는 출력에 따라, 그리고 교류·직류 여부에 따라 분류되는데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전기차 구동에 전용되는 모터를 구분하기 위해 제8501호 소호 분류 체계가 개편될 가능성도 있다.

수소전기차에서 사용되는 연료전지 역시 발전기의 한 형태로 봐 현재 제8501호에 분류되고 있다. 제8501호 해설서는 발전기에 대해 기계·태양 등 여러 가지 에너지원으로부터 전력을 얻는 기계로 설명하고 있다. 작동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전기를 생산해낸다는 측면에서 연료전지는 발전기와 동일하다. 그러나 제8501호에 분류되는 대부분의 발전기는 (태양광 발전기를 제외 하면) 보통 하우스 내 고정자와 회전자로 구성돼 원동기(터빈 등)에서 발생한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데 비해 연료전지는 내부에 연료가 될 수 있는 물질을 촉매를 이용한 화학반응을 통해 변환시키면서 전기를 생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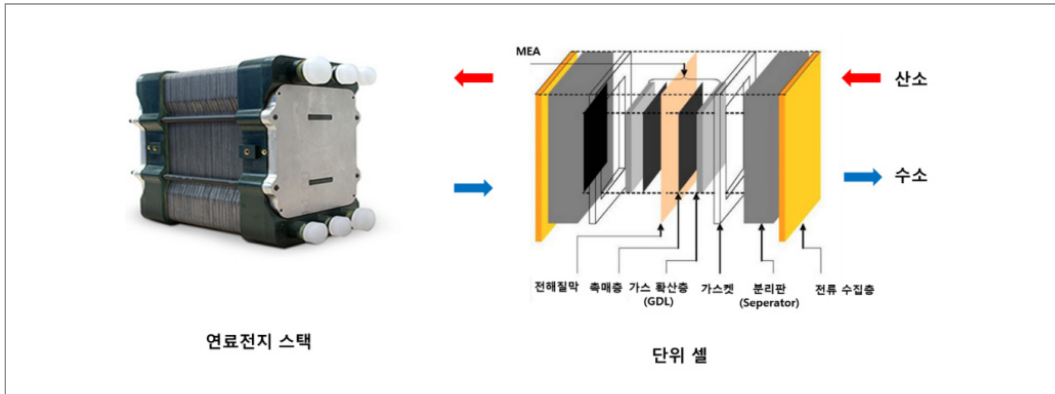
● 연료전지 기본 작동 원리 ●



※ 출처 : 고대신문

연료전지는 전극, 분리판, 전해질막 등으로 이뤄져 구조적으로는 전통적인 발전기보다 이차전지와 더 유사한 측면이 있다. 때문에 연료전지는 때로 3차전지로 불리기도 한다. 수소전지 등 연료전지 차량이 보편화된다면 제8501호의 분류 체계나 해설서도 이에 따라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

● 수소연료전지 스택과 단위 셀의 구조 ●



※ 출처 : seongyun-dev.tistory.com/9

전기차용 배터리는 제8507호에 분류되며, 배터리 제조원료인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등은 제28류, 제29류, 제3824호 등에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배터리 원료로서 다양한 신소재가 앞으로 더 개발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만큼 4단위 호 레벨에서 달리 분류되는 새로운 물품이 등장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제8507호의 소호 분류 체계 또한 전기차 시대에 맞춰서 개정될 여지가 있다고 봐야 한다.

다. 차량용 반도체와 센서

자율주행의 두 가지 핵심 요소는 AI와 센서일 것이다. 센서는 인간의 오감과 마찬가지로 주변의 다양한 정보, 즉 물리적·화학적 현상의 상태나 변화 등을 감지하고 AI는 인간의 뇌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보를 취합·분석해 자동차의 각 부분을 제어할 것이다.

본격적인 자율주행 단계에 진입하지 않은 현재 기준에서도 이미 센서는 자동차의 핵심 부품 중 하나다. 자동차의 구동과 콘텐츠에 관여하는 차량 내의 전자정보 시스템은 센서, 액추에이터, 전자제어장치(ECU)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온도, 습도, 압력, 유량 등의 기본 정보만 아니라 자동차의 운행, 엔진 등 구성 요소의 제어, 조향이나 제동, 충돌방지 등 다양한 용도에 수십 가지의 센서가 이미 자동차에 적용되고 있다.

2022년 HS에서 제8541호의 개정은 자동차 센서와 관련해 시사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 제85류 주 제12호(HS 2022) ●

12. 제8541호와 제8542호에서

가. 1) ‘반도체 디바이스’란 전계(電界)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동을 하는 반도체디바이스나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를 말한다. 반도체 디바이스는 보조적 기능을 하는 능동·수동소자를 장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다수 부품의 조립품을 포함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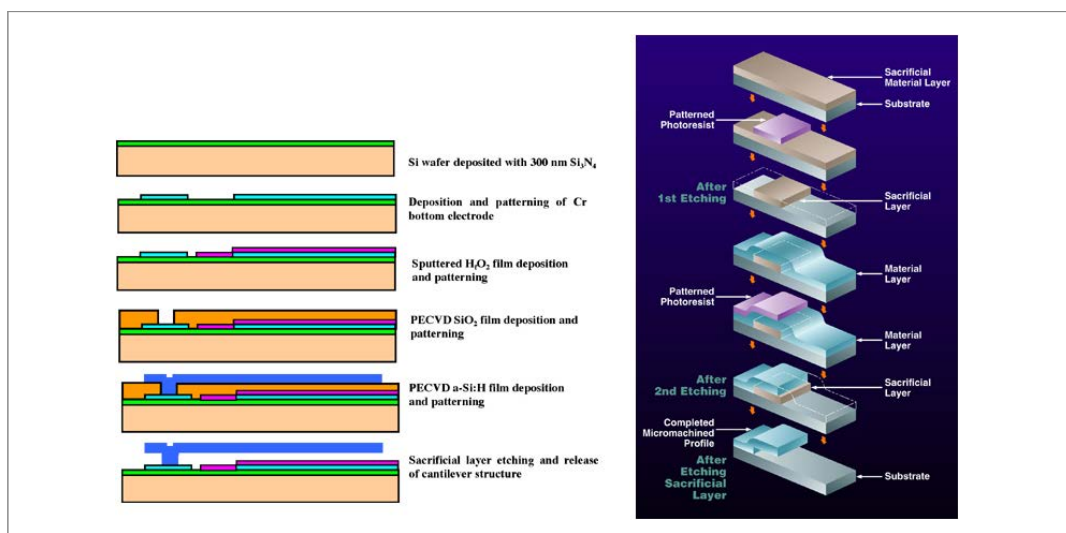
이 정의에서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란 개별 반도체 기반 센서·반도체 기반 액추에이터·반도체 기반 공진기·반도체 기반 오실레이터로서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디바이스로 별개의 형태를 갖추었으며,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며, 어떠한 종류의 물리적·화학적 현상·활동을 전기적 신호로 바꾸거나 전기적 신호를 물리적인 현상·활동으로 바꾸는 기능을 하는 디바이스를 말한다.

… <생략> …

개정된 2022년 HS에서 제8541호에 포함되는 반도체 디바이스는 기존의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LED, 태양전지 등 전통적인 개념의 반도체 디바이스 이외에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됐다. 여기에는 외부의 물리적·화학적 현상을 전기적인 신호로 바꾸주는 센서도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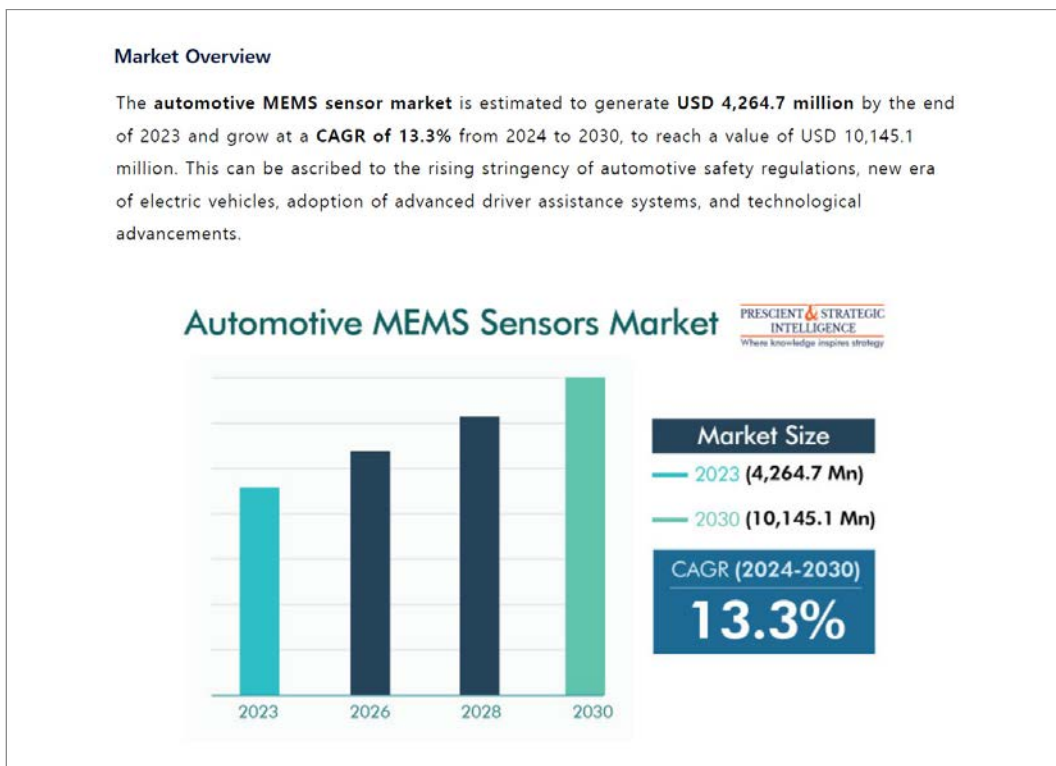
따라서 반도체 재료로 만들어진 센서로서 기존의 제85류 주의 규정상 반도체 디바이스의 정의에는 해당되지 않던 (주로 제90류 각 호의 측정기로 분류되거나 전기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던) 다수의 물품이 제8541호에 포함되도록 호의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대표적인 물품으로 반도체 재료로 만들어진 MEMS chip 제품이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 MEMS chip 제조공정 ●



MEMS(Micro-Electro Mechanical Systems, 미세전자기계시스템)는 나노기술을 이용해 제작되는 매우 작은 기계를 의미한다. MEMS의 제작은 반도체 제작기술에서 발달했다. 즉 반도체 재료(주로 실리콘)를 이용해 증착(deposition), 노광(exposure), 식각(etching) 등의 과정을 반복해 3차원의 미세한 기계구조를 형성하며 이러한 구조는 외부의 충격이나 압력 변화 등을 감지해 이를 전기신호로 변환 출력하는 센서로 주로 사용된다. 자동차용 MEMS 센서의 사용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이며 자율주행 시대에는 그 활용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자동차용 MEMS 센서 시장 전망 ●



※ 출처 : Prescient&Strategic Intelligence

6. 맺음말

지금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1인 모빌리티, 자율주행 등의 견지에서 HS 품목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하게 살펴봤다. 미래 모빌리티라면 그 밖에도 초연결(connected), 차량공유(sharing) 등의 키워드를 더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요소는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상의 관점일 뿐 자동차의 품목분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라는 판단하에 이 글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본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기차, 1인 모빌리티, 로봇, 부분품 등의 관점에서 향후 HS 품목분류 표 개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

※ 이 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고추&가지 스프레드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스프레드(spread)는 나이프를 이용해 빵이나 크래커 등에 발라먹는 음식을 말하며, 어원은 ‘펼치다’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인 ‘스프레드(spread)’에서 유래했다. 주로 담백한 음식의 풍미와 식감을 살리기 위해 사용되며 음식을 찍어 먹는 것이 아닌 음식에 발라 먹는다는 점에서 포테이토 칩이나 채소에 쓰이는 딥, 멕시코 요리에 쓰이는 살사와는 구별된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피망, 해바라기유, 와인식초, 정제소금, 마늘, 고추 등으로 혼합·조제된 노란색계 점조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제2005.99-9000호로 신고했다.

제2103호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肉)·과실·곡물 가루·전분·기름·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 … <중략> … 이 호에는 채소나 과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그 조제품은 주로 액체·에멀전(emulsion)이나 현탁액(suspension)으로서 때로는 채소나 과일 조각을 함유한다. 이들 조제품은 그 자체로는 식용하지 않지만 소스, 즉 특정 요리의 조제나 요리에 곁들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제20류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와 과실과는 구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참고로 관세율표 제9류 총설에서는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물품(또는 가목, 나목의 혼합물)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해당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그 밖의 혼합물은 이 류로 분류하지 않으며, 혼합조미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제2103호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 물품은 분쇄된 피망 외에 해바라기유, 식초, 마늘 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리조또, 빵, 피자 등에 곁들여서 먹는 제품이므로 제9류에서 말하는 향신료의 본질적 특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제20류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와는 구별되는 제품이었다.

따라서 본 물품은 조제된 소스로 봐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SPREAD	2005.99-9000 (FEU1 0%)	Sauce	2103.90-9090 (FEU1 8.4%)

황금을 기계 부품으로 위장 수입

박 현 수 | 관세법인 부일(관세사)

금은 고대부터 화폐, 재산 축적의 수단, 장신구와 각종 예술품을 만들거나 치장하는 데 사용됐다. 현대에 와서는 반도체, 전자공학, 인쇄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치과에서 치과 보철에, 전자공업에서는 전기가 흐르는 전선과 이들의 연결 부분에 쓰이기도 하며, 붉은 색을 띠는 유리 제조, 각종 금 도금, 건물 유리창의 코팅 등에도 사용된다.

최근 전쟁 등 불안한 국제정세로 국제 금값이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홍콩에서 145억원 규모의 금 밀수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홍콩세관이 적발한 금 밀수 사건 중 역대 최대 금액이다.

홍콩세관에 따르면, 일본으로 수출되는 항공화물에서 기계부품이 달린 공기압축기 속모터, 펌프, 스크류 등 전부 금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검역 과정에서 압축기 무게를 비롯해 이상징후가 발견돼 부품 표면을 굽어보니 금이 발견됐다.

홍콩 세관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31세 남성을 밀수혐의로 체포하고, 홍콩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200만 달러의 벌금과 7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금이 간혹 기계부품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수출입이 아닌 오로지 부정밀수를 위한 불법, 부당한 행위다.

우리나라에서도 여행용 가방 바퀴를 금으로 위장하는 등의 편법 밀수 행위가 적발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관세율표에서 금으로 된 관련 제품은 가공 여부 및 각종 제품을 포함해 제71류 중 제7108호 ‘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에서부터 제7115호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그 밖의 제품’에 분류한다.

그러나 관세율표 제71류 주(note)에서 각종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유의해야 한다.

논문모집

발행 일정

구분	학술지 발행일	논문 투고 마감일
제1호 (3월)	3월 31일	1월 31일
제2호 (6월)	6월 30일	4월 30일
제3호 (9월)	9월 30일	7월 31일
제4호 (12월)	12월 31일	10월 31일

※ 논문 게재를 원하는 연구자는 각 호별 논문투고 마감일까지 논문 투고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는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세·무역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본 학술지는 연구 장려를 위해 투고료와 심사료를 받지 않으며,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연구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투고 방법

이메일 송부 (kcr@kctdi.or.kr)

*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 참조

원고 분량

20매 내외

제출 자료

- ① 논문 원고
- ② 논문투고 신청서
- ③ 연구 윤리 확인서

투고 자격

관련 전문가(학계·연구·실무자) 및 대학원생

논문 주제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연구지원금

편 당 **200만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함)

문의처

연구본부 연구실
Tel 02-3416-5168



주간 관세무역정보 통권 제2081호_2024.5.6.

최신개정법령

대통령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령

-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
- 「이집트산 백색 시멘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본 내용은 www.custracom.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4453호, 2024.4.3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 단서 중 “2024년 4월 30일”을 “2024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4454호, 2024.4.3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 단서 중 “2024년 4월 30일”을 각각 “2024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령

■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5호, 2024.5.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출원상표가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여 상표등록의 거절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출원상표의 상표등록에 동의를 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제상표등록 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법률 제19809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아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제등록의 분할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국제상표의 분할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 중 “보정 또는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보정, 지정기간 연장신청 또는 분할 신청”으로, “보정서 또는 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보정서, 지정기간 연장신청서 또는 국제상표의 분할 신청서”로 한다.

제2장에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상표등록 동의서의 제출) ① 출원인이 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단서 또는 법 제35조 제6항에 따른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아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
 - 가. 법 제55조 제1항 후단 및 제87조 제2항에 따른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나. 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
 - 다. 법 제116조에 따른 심판에 대한 의견서 제출(법 제145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46조 및 제147조에 따라 제출하는 의견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

- 가. 법 제36조에 따른 상표등록출원
 - 나. 법 제44조에 따른 상표등록 변경출원
 - 다. 법 제45조에 따른 상표등록 분할출원
 - 라.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상표등록 분할이전출원
 - 마. 법 제86조에 따른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
 - 바. 법 제205조 및 제206조에 따른 상표등록출원
3. 법 제116조에 따른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
- ②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출원인이 제1항에 따른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그 내용을 보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2·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기간
 2. 제1항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간
 3. 제1항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6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날부터 법 제149조 제3항에 따른 심리 종결의 통지를 한 날까지
 4.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0조 제1항 각 호 및 법 제4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각의 기간
 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간

제3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단서 또는 법 제35조 제6항에 따른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제5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 “상표권자(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도 상표권자로 본다)”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87조의2의 제목 “(소리·냄새상표의 파일 또는 견본의 제출 등)”을 “(국제상표등록출원 등 절차의 보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88조의2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또는 제91조의2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④ 특허청장은 제88조의2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또는 제91조의2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보정을 명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야 한다.

⑤ 특허청장은 제88조의2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또는 제91조의2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에 대하여 마드리드 의정서 규칙 제27조의2(3)에 따라 국제사무국이 하자를 통5,지한 경우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도록 해야 한다.

제88조의2 및 제9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8조의2(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 신청)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분할 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국제상표의 분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분할하려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함께 보정해야 한다.

1.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국제등록의 분할 신청서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91조의2(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신청)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상표권을 지정상품별로 분할하려는 상표권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국제상표의 분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국제등록의 분할 신청서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이하 별지 기재요령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지의 변경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제33조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출원된 상표등록출원, 변경출원, 분할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동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6호, 2024.5.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법률 제19809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국제상표등록출원을 분할하는 경우 6만8천원을,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을 분할하는 경우 매 건마다 7만3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한편, 보호보상대상자, 그 유족·가족 및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그 유족·가족을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면제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9호 중 “4만4천원.”을 “5만1천원”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1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출원료: 6만8천원. 다만, 다류지정 상표등록출원의 분할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되는 출원마다 1만3천원으로 한다.
1. 동일 상품류구분에 속하는 지정상품의 변경 없이 상품류구분만을 분할출원하는 경우
 2. 동일 상품류구분에 속하는 지정상품을 삭제하면서 상품류구분만을 분할출원하는 경우
- ⑤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등록료: 매건 마다 7만3천원

별표 4 면제대상란 제1호 중 “가족”을 “가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그 유족 및 가족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표의 면제대상란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 2. 「보호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보호보상 대상자, 그 유족 및 가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 및 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허출원·실용신안등록출원·디자인등록출원, 심사청구 및 최초 3년분의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허심사청구 후 추가한 청구항 관련 특허심사청구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특허출원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특허출원의 보정으로 청구항을 추가하는 경우의 특허심사청구료에 관하여는 제2조 제1항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이집트산 백색 시멘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1065호, 2024.4.30.)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이집트산 백색 시멘트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이집트산 백색 시멘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이집트산 백색 시멘트(「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523.21.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잠정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5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 관세율(%)
이집트	1. 로얄시멘트(Royal El Minya Cement Co.)와 그 관계사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60.83
	2. 알바트로스 시멘트 트레이딩(Albatros International Cement Trading Ltd.)과 그 관계사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60.83
	3. 그 밖의 공급자	60.83

신규 발간도서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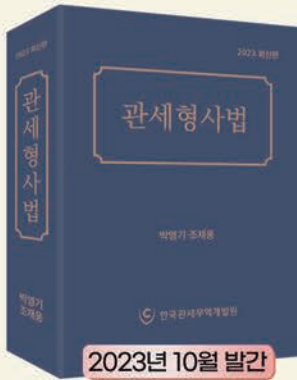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2024년 신간)

FTA 및 WTO 등 관련 세율과 통합공고 및 기타 고시 등
수출입 통관에 필요한 정보를 단 한 권에!

10% ~~120,000원~~ **온라인 구매 108,000원**



2024년 1월 발간



2023년 10월 발간

관세형사법(2023년 개정판)

정확한 법집행과 적법절차 준수를 향한 지침서

관세/무역/외환형사분야의 복잡한 법리와 실무 정립,
중요 판례와 조사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소개

10% ~~60,000원~~ **온라인 구매 54,000원**

관세환급실무(2023년 개정판)

물품의 신속통관과 관세환급제도의 중요성

물류비용 절감과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 제고

개정 서식 반영 및 사례와 그림으로 엮어 바로 실무에 활용

10% ~~50,000원~~ **온라인 구매 45,000원**



2023년 10월 발간

※ 상기 도서의 이미지는 실제 이미지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

발간 예정 도서 사전 예약 할인!

Special
price!

구매 문의 02)3416-5112 **온라인 구매** smartstore.naver.com/kctdi

2024 (개정판) 관세법령집

관세/무역 관련 법령 총 망라,
관세 행정 업무는 이 한권으로!



발간기념
10% 할인

60,000 원 ➡ 54,000 원

1

최신 기준 반영

관세/무역 관련 법령
2024년 4월 1일 기준
수록

2

변경 법령 반영

새로 제정된 덤핑/상계관세
세부운영규정 고시 반영
24년 관련법 개정이유
수록

3

쉽고 편한 법령 참조

관세법 등 최신 판례 및
고시명 업데이트
(판례 8개, 고시명 66개 등
총 74개 변경)



도서구매 문의 및 온라인 구매처

Tel : 02)3416-5112 / Fax : 02)3442-2840

커스트라 : www.custra.com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